

투자 위험 등급 4등급(보통 위험)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 을 감안하여 4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삼성솔루션코리아플러스알파혼합자산투자신탁H[사모투자재간접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솔루션코리아플러스알파혼합자산투자신탁H[사모투자재간접형]**를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삼성솔루션코리아플러스알파혼합자산투자신탁H[사모투자재간접형]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
 3. 판매회사 : 집합투자업자(<http://www.samsungfund.com>) 및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 참조
 4. 작성기준일 : 2022.12.28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3. 1.10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 수익증권
[모집(매출) 총액 : 10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2017년 12월 11일부터 모집을 개시하며 모집개시일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하여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 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금융위원회, 각 판매회사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 이 투자설명서는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 요약정보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가. 형태별 종류
 - 나. 운용자산별 종류
 -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마. 특수형태
3. 모집 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
 - 가. 운용전문인력 현황
 - 나.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변경 내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나. 종류형 구조
 - 다. 모자형 구조
 - 라. 전환형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 가. 투자 대상
 - 나. 투자 제한

-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 가.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 나. 수익 구조
-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 11. 매입, 환매, 전환 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 기준
 - 가. 매입
 - 나. 환매
 - 다. 전환
- 12. 기준가격 산정 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가. 이익 배분
 - 나. 과세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1. 재무정보
 - 가. 요약 재무정보
 - 나. 재무상태표
 - 다. 손익계산서
-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 가. 연평균 수익률
 -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제4부 |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 가. 회사 개요
 - 나. 주요 업무
 -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 라. 운용자산 규모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 가. 회사 개요
 - 나. 주요 업무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 가. 회사 개요
 - 나. 주요 업무

제5부 |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 가. 수익자총회
 - 나. 잔여재산분배
 -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라. 손해배상책임
 - 마. 재판관할
 -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증권의 해지에 관한 사항
 - 가. 의무 해지
 - 나. 임의 해지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 가. 정기 보고서
 - 나. 수시 공시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 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하게 검토한 뒤 투자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에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 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 금액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10. 이 투자신탁은 일반 사모 집합투자기구에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사모투자재간접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주요 투자대상인 일반 사모 집합투자기구는 공모 집합투자 기구에서 적용되는 공시 의무 등이 법령 상 배제되어 운용과 관련된 정보의 상세한 내역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모투자재간접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는 물론, 공모 집합투자기구에 주로 투자하는 일반적인 재간접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기회비용과 투자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 동 증권(일괄)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간이 설명서 포함)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11.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증권은 성과보수가 부과될 수 있어, 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 대비 더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성과보수는 운용수익률에 연동하여 환매 또는 결산 시점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성과가 좋을수록 더 높은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게 되므로 투자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증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피투자 집합투자증권의 성과보수를 차감하지 않은 기준가격을 산출하며, 피투자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또는 결산시점이 도래할 경우 성과보수 지급에 따른 가치하락 위험이 존재할 수 있고, 투자자가 환매를 하는 경우에도 피투자 집합투자증권 환매에 따른 성과보수 발생으로 투자자가 예상한 수익률보다 낮은 수익률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피투자 집합투자증권 중 투자이익이 발생한 집합투자증권에서는 성과보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자의 투자손실은 더 확대될 수 있습니다. 즉, 피투자 집합투자증권이 성과보수를 부과하는 경우 투자자의 예상보다 실제 환매 시 낮은 수익률이 실현될 수 있으며, 성과보수를 부과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것보다 실현되는 수익률의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12.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증권은 일반 공모집합투자증권과는 달리 매일 설정 및 환매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투자대상 자산의 유동성 제약 등을 이유로 환매 청구 시점부터 환매대금 지급일까지의 환매주기가 오랜 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환매주기도 일반적인 투자신탁보다 길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간 내에 투자자금을 유동화하기를 원하거나, 오랜 환매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가치변동 위험을 원치 않는 투자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3. 이 투자신탁은 특정 투자자의 환매에 따른 피투자 일반 사모집합투자증권 매도 시 성과보수 또는 환매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어, 이 투자신탁 전체의 가치 하락 및 잔존수익자의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에서는 이와 같은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와 잔존수익자 간의 이해상충 문제를 일정부분 완화하기 위하여, 투자자가 환매를 요청하는 경우 투자신탁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금액을 기준으로 환매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가 환매를 하는 경우 투자자의 수익률은 환매수수료 부과에 따라 예상보다 하락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환매수수료 부과로 손실폭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때 부과된 환매수수료는 투자신탁재산으로 귀속됩니다.

※ 동 증권(일괄)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간이 설명서 포함)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14.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증권은 시가가 없는 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자산의 시가가 없는 경우 일반 사모집합투자증권은 공정가격으로 평가하여 기준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나, 공정가격이 시장가격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일반 사모 집합투자증권은 매일 기준가격을 산출하지 않고 일정기간(주간, 월간 등) 동안 1번씩 기준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 사모 집합투자증권이 투자하는 자산의 가치가 적시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은 투자자산이 공정가격으로 평가되는 경우 또는 적시에 산출되지 않는 경우 등으로 인해 이 집합투자기구에서 설정 및 환매가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별로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5. 최초설정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 원본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없이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모자형 증권투자신탁으로 전환한 후, 투자대상이 되는 모투자신탁을 "삼성솔루션글로벌알파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현재 기준)으로 변경하며,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에는 임의해지하거나, 수익자총회 없이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모자형 증권투자신탁으로 전환한 후, 투자대상이 되는 모투자신탁을 "삼성솔루션글로벌알파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현재 기준)으로 변경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 이 투자신탁은 파생상품 투자에 따른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과 편입중인 고난도집합투자증권의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상품 투자로 인한 최대 원금손실 가능 금액의 합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합니다.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은 그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큰 금융투자상품을 의미하며 투자자는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숙려기간 등의 권리가 보장됩니다.

※ 동 증권(일괄)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간이 설명서 포함)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요약정보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 2022.12.28)

삼성솔루션코리아플러스알파혼합자산투자신탁H[사모투자재간접형](펀드 코드: C0326)

투자 위험 등급 4등급(보통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4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입니다. 해당 집합투자기구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과생상품 등의 편입으로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집합투자기구는 국내 사모펀드 및 글로벌 헤지펀드 등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신탁재산의 **50% 초과** 투자함에 따라, 국내외 사모펀드 투자에 따른 **일반 사모 집합투자증권 투자에 따른 위험, 성과보수 부과에 따른 가치변동위험, 환율변동 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삼성솔루션코리아플러스알파혼합자산투자신탁H[사모투자재간접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 사모펀드 및 글로벌 헤지펀드 등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신탁재산의 50% 초과 투자함에 따라, 투자대상의 가치 상승에 따른 투자수익 및 안정적인 위험조정 수익을 추구합니다.										
분류	투자신탁, 혼합자산(재간접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종류형, 사모투자재간접형, 고난도금융투자상품 -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은 그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큰 금융투자상품을 의미하며 투자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숙려기간 등의 권리가 보장됩니다.										
투자비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 (단위 : 천원)					
	클래스종류	판매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총 보수·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납입금액의 1.0%이내	0.980%	0.550%	0.88%	3.133%	410	729	1,063	1,783	3,92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없음	1.330%	0.900%	0.99%	3.485%	348	706	1,082	1,891	4,294
	수수료선취-온라인(Ae)	납입금액의 0.5%이내	0.700%	0.270%	0.61%	1.760%	225	405	594	1,000	2,208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없음	0.880%	0.450%	0.77%	3.042%	304	617	945	1,651	3,74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없음	1.240%	0.810%		2.300%	230	466	714	1,248	2,834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없음	0.830%	0.400%		1.890%	189	383	587	1,026	2,329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3년 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이내	0.680%	0.250%		3.119%	326	646	982	1,705	3,8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중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 (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 + 피투자펀드보수)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되, 기타 비용(증권거래 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이차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투자펀드보수는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기준으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신탁(모투자신탁 포함)에 투자한 비용을 안분하여 산출한 피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산한 것입니다. 다만, 해당 보수 및 기타비용을 알 수 없는 경우, 산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종류 A형과 종류 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9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8개월이 되는 경과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1/12/29~22/12/28	20/12/29~22/12/28	19/12/29~22/12/28	17/12/29~22/12/28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2018-01-12	-5.78	2.07	2.56		1.29
비교지수(%)	2017-12-18					-
수익률 변동성(%)	2017-12-18	4.67	4.47	5.93	5.18	5.17

- 비교지수 :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기간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오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용전문 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혼합자산)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김태훈	1988	책임(Associate)	6개	2,026억원	-4.87%	6.45%	-3.71%	4.88%	7년 8개월

-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운용전문인력입니다.
-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해당사항없음
- 위의 집합투자기구 수에는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 사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 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 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투자
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전문투자형 사모 집합투자증권 투 자에 따른 위험	<p>이 투자신탁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입니다. 주요 투자대상인 전문투자형 사모 집합투자증권은 공모 집합투자기구에 적용되는 공시의무 등이 법령상 배제되어 운용과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공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되는 운용규제 등이 완화되거나 배제되어 더 많은 투자위험이 존재할 수 있어 투자결과에 따라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 사모집합투자증권의 파생상품 위험 평가액 및 급전차입 한도는 최대 400%까지 허용되고, 공모집합투자증권에서 적용되는 분산투자 등의 운용제한 요건이 배제되어 특정 종목 또는 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이 현저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p> <p>* 일반 사모집합투자증권에서 적용 배제되는 주요 운용 규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종목 증권 투자제한 (10%) -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제한 (100%) - 동일 집합투자업자 운용 집합투자증권 편입제한 (50%) - 각 집합투자기구의 같은 집합투자증권의 편입제한 (20%) - 각 집합투자기구에 편입하는 같은 집합투자증권 총수 제한 (20%) - 증권의 대여 제한 (50%) - 증권의 차입 제한 (20%)
전문투자형 사모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산정위 험	<p>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증권은 시가가 없는 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자산의 시가가 없는 경우 일반 사모집합투자증권은 공정가격으로 평가하여 기준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나, 공정가격이 시장가격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일반 사모 집합투자증권은 매일 기준가격을 산출하지 않고 일정기간(주간, 월간 등) 동안 1번씩 기준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투자형 사모 집합투자증권이 투자하는 자산의 가치가 적시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은 투자자산이 공정가격으로 평가되는 경우 또는 적시에 산출되지 않는 경우 등으로 인해 이 집합투자기구에 설정 및 환매가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별로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p>
전문투자형 사모 집합투자증권 성 과보수 부과에 따른 가치변동 위험	<p>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증권은 성과보수가 부과될 수 있어, 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 대비 더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성과보수는 운용수익률에 연동하여 환매 또는 결산시점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성과가 좋을수록 더 높은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게 되므로 투자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증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피투자 집합투자증권의 성과보수를 차감하지 않은 기준가격을 산출하며, 피투자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또는 결산시점이 도래할 경우 성과보수 지급에 따른 가치하락 위험이 존재할 수 있고, 투자자가 환매를 하는 경우에도 피투자 집합투자증권 환매에 따른 성과보수 발생으로 투자자가 예상한 수익률보다 낮은 수익률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피투자 집합투자증권 중 투자이익이 발생한 집합투자증권에서는 성과보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자의 투자손실은 더 확대될 수 있습니다. 즉, 피투자 집합투자증권이 성과보수를 부과하는 경우 투자자의 예상보다 실제 환매 시 낮은 수익률이 실현될 수 있으며, 성과보수를 부과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것보다 실현되는 수익률의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p>
전문투자형 사모 집합투자증권 투 자에 따른 환매 주기 관련 위험	<p>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증권은 일반 공모집합투자증권과는 달리 매일 설정 및 환매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투자대상 자산의 유동성 제약 등을 이유로 환매 청구 시점부터 환매대금 지급일까지의 환매주기가 오랜 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환매주기도 일반적인 투자신탁보다 길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간 내에 투자자금을 유동화하기를 원하거나, 오랜 환매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가치변동 위험을 원치 않는 투자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p>
전문투자형 사모 집합투자증권 투 자에 따른 환매 시 가치변동 위 험	<p>이 투자신탁은 특정 투자자의 환매에 따른 피투자 일반 사모집합투자증권 매도 시 성과보수 또는 환매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어, 이 투자신탁 전체의 가치하락 및 잔존수익자의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에서는 이와 같은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와 잔존수익자 간의 이해상충 문제를 일정부분 완화하기 위하여, 투자자가 환매를 요청하는 경우 투자신탁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금액을 기준으로 환매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가 환매를 하는 경우 투자자의 수익률은 환매수수료 부과에 따라 예상보다 하락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환매수수료 부과로 손실폭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때 부과된 환매수수료는 투자신탁재산으로 귀속됩니다.</p>

주요투자 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고난도금융투자 상품 위험	이 투자신탁은 파생상품 투자에 따른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과 편입중인 고난도집합투자증권의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상품 투자로 인한 최대 원금손실 가능 금액의 합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합니다.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은 그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큰 금융투자상품을 의미하며 투자자는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숙려기간 등의 권리가 보장됩니다.	
매입 방법	<p>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p> <p>오후 5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p>	환매 방법	<p>매주 수요일(환매기준일. 단,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익영업일) 환매기준일의 17시이전:환매기준일로부터 12영업일(D+11) 기준가 18영업일(D+17) 지급</p> <p>환매기준일의 17시이후:다음 환매기준일로부터 12영업일(D+11) 기준가 18영업일(D+17) 지급</p>
환매 수수료	A, Ae, Ag, C, C-P, C-Pe, Ce, Cf, Cg, Ci, Cw, S, S-P : 6개월미만: 환매금액의 1.0%, 6개월이상: 없음		
기준가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산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 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 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http://www.samsungfund.com)·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과세	구분	과세의 주요내용	
	<p>집합투자기구</p> <p>수익자</p>	<p>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p> <p>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p> <p>※ 세계혜택과 등 투자자의 과세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2부,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전환절차 및 방법	<p>1. 이연판매보수(CDSC) 적용기준 및 내용</p> <p>- 해당사항없음</p> <p>2. 전환형 구조</p> <p>- 해당사항 없음</p>		
집합투자업자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 (대표전화:02-3774-7600, 콜센터:080-377-4777)		
모집기간	2017년 12월 11일부터 모집을 개시하며 모집개시일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하여 모집할 수 있습니다.	모집·매출 총액	10조좌
효력발생일	2023. 1.10	존속기간	해당사항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http://www.samsungfund.com) 및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 참조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수수료	수수료선취	판매수수료선취형(A)는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9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년 9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수수료	수수료미징구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는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9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년 9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경로	<table border="1"> <tr> <td>온라인</td> <td>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td> </tr> <tr> <td>온라인슈퍼</td> <td>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td> </tr> <tr> <td>오프라인</td> <td>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td> </tr> </table>	온라인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온라인슈퍼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온라인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온라인슈퍼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기타	개인연금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액	최소 가입금액이 정해져 있는 고액투자자에 한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관	집합투자증권 및 기관투자자 등에 한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 계좌전용 등의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무권유저비용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http://www.samsungfund.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http://www.samsungfund.com>)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http://www.samsungfund.com>)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클래스)	펀드코드
삼성솔루션코리아플러스알파혼합자산투자신탁H[사모투자재간접형]	C0326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C0327
수수료선취-온라인(Ae)	C0328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C032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C0333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C033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C033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C033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C033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C033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CD815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CD816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C0339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CD817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혼합자산(재간접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중도환매가능)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납입가능)

마. 특수형태

- 종류형(판매보수 및 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 사모투자재간접형(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법에 따라 등록된 외국 집합투자기구 포함)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투자신탁)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 해당(이 투자신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7호에 따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투자전략의 복잡성으로 인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이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 2부의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 예정금액

10조좌

- 주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주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모집기간	2017년 12월 11일부터 모집을 개시하며 모집개시일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하여 모집할 수 있습니다.
모집장소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samsungfund.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 또는 배정절차 및 방법	특이사항 없음
매출인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주) 그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2부의 "11.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클래스)	펀드코드
삼성솔루션코리아플러스알파혼합자산투자신탁H[사모투자재간접형]	C0326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C0327
수수료선취-온라인(Ae)	C0328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C032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C0333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C033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C033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C033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C033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C033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CD815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CD816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C0339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CD817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17. 12. 18	최초 설정
2018. 8. 13	매입일, 환매수수료 변경, 클래스 추가(C-P, C-Pe, S-P)
2019. 10. 30	사모투자재간접펀드 최소 가입금액 500만원 조항 삭제
2021. 1. 14	운용역 변경(한창훈 운용역 → 김태훈 운용역)
2021. 5. 10	고난도금융투자상품 대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신탁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투자신탁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투자자의 저축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함) 또는 신탁계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삼성자산운용(16~18층) (대표전화 : 02-3774-7600, 콜센터 : 080-377-4777)

주)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의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현황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혼합자산)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김태훈	1988	책임(Associate)	6개	2,026억원	-4.87%	6.45%	-3.71%	4.88%	7년 8개월

성명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김태훈	2015년 02월 ~ 2019년 10월 하이자산운용 2019년 11월 ~ 2020년 01월 삼성자산운용 멀티에셋운용팀 2020년 02월 ~ 2022년 11월 삼성자산운용 대체자산운용팀 2022년 12월 ~ 現 삼성자산운용 PD투자2팀

- (주1)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운용전문인력입니다.
- (주2)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해당사항없음
- (주3) 위의 집합투자기구 수에는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주4)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5)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 (주6)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나.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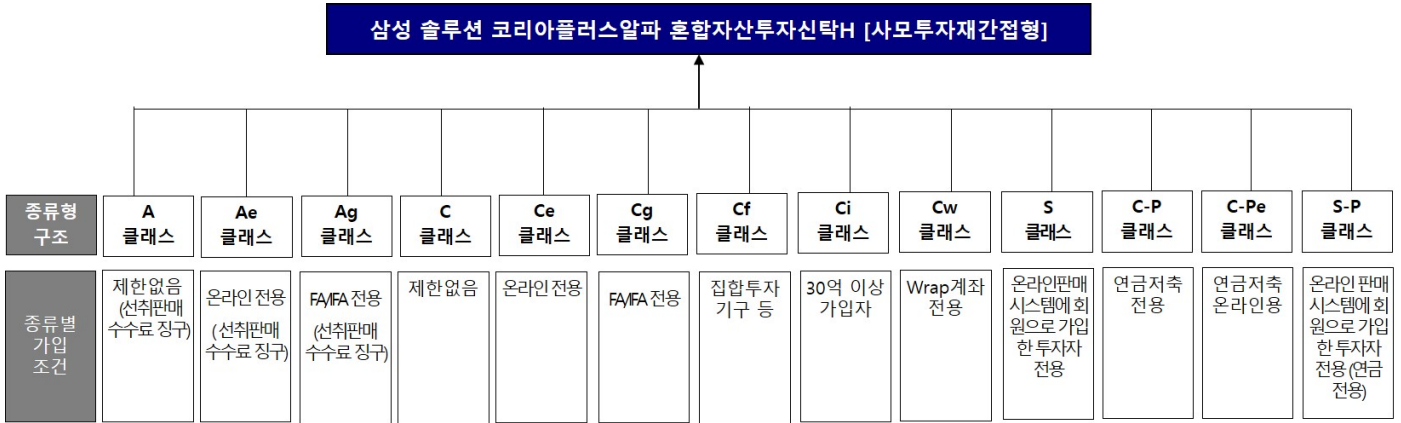
운용역	운용 기간
한창훈	2017.11.13 ~ 2021. 1.13
김태훈	2021. 1.14 ~ 현재

주1) 2023. 1.10 기준 최근 3년간의 운용전문인력 내역입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혼합자산(재간접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종류형, 사모투자재간접형, 고난도금융투자상품



나. 종류형 구조

- 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종류의 수익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수 수수료	수수료선취	판매수수료선취형(A)는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9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년 9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미징구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는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9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년 9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경 로	온라인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온라인슈퍼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기타	개인연금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기타	개인연금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액	최소 가입금액이 정해져 있는 고액투자자에 한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관	집합투자증권 및 기관투자자 등에 한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 계좌전용 등의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무권유저비용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클래스종류	최초설정일	가입자격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2018. 1. 12	가입제한이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수수료선취-온라인(Ae)	2017. 12. 18	온라인(On-Line) 가입자 전용. 선취판매수수료 징구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미설정	법제8조제5항에 따른 투자자문업자로부터 법제6조제6항에 따른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매수를 요청하거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법제9조제4항에 따른 투자권유 없이 본 집합투자증권의 매입하는 투자자 전용. 선취판매수수료 징구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2018. 1. 12	가입제한이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2018. 2. 20	온라인(On-line) 가입자 전용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2018. 4. 20	법제8조제5항에 따른 투자자문업자로부터 법제6조제6항에 따른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매수를 요청하거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법제9조제4항에 따른 투자권유 없이 본 집합투자증권의 매입하는 투자자 전용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2017. 12. 18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10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전용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2019. 5. 28	30억원 이상 매입하는 가입자 전용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미설정	Wrap ACCOUNT, 특정금전신탁, 보험업법 상의 특별계정 가입자 전용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미설정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미설정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온라인(On-Line)전용 수익증권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2018. 2. 23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 후취판매수수료 징구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 연금(S-P)	미설정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	-----	--

(3) 종류별 수수료 및 보수에 관한 사항

클래스종류	수수료			보수(연,%)			
	선취판매	후취판매	환매	집합투자	판매	신탁	일반사무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납입금액의 1.0%이내	-	6개월미만 : 환매금액의 1.0%, 6개월이상 : 없음	0.40	0.55	0.03	-
수수료선취-온라인(Ae)	납입금액의 0.5%이내	-	6개월미만 : 환매금액의 1.0%, 6개월이상 : 없음	0.40	0.27	0.03	-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납입금액의 0.7%이내	-	6개월미만 : 환매금액의 1.0%, 6개월이상 : 없음	0.40	0.38	0.03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	-	6개월미만 : 환매금액의 1.0%, 6개월이상 : 없음	0.40	0.90	0.03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	-	6개월미만 : 환매금액의 1.0%, 6개월이상 : 없음	0.40	0.45	0.03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	-	6개월미만 : 환매금액의 1.0%, 6개월이상 : 없음	0.40	0.63	0.03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Cf)	-	-	6개월미만 : 환매금 액의 1.0%, 6개 월이상: 없음	0.40	0.03	0.03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객 (Ci)	-	-	6개월미만 : 환매금 액의 1.0%, 6개 월이상: 없음	0.40	0.27	0.03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	-	6개월미만 : 환매금 액의 1.0%, 6개 월이상: 없음	0.40	0.00	0.03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 금(C-P)	-	-	6개월미만 : 환매금 액의 1.0%, 6개 월이상: 없음	0.40	0.81	0.03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C-Pe)	-	-	6개월미만 : 환매금 액의 1.0%, 6개 월이상: 없음	0.40	0.40	0.03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	3년 미만 환매시 환 매금액의 0.15%이내	6개월미만 : 환매금 액의 1.0%, 6개 월이상: 없음	0.40	0.25	0.03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 연금(S-P)	-	-	6개월미만 : 환매금 액의 1.0%, 6개 월이상: 없음	0.40	0.20	0.03	-

주) 자세한 사항은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모자형 구조

- 해당사항 없음

라. 전환형 구조

- 해당사항 없음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분산 투자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가치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1)	집합투자증권등	60% 이상. 다만,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초과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항에서 규정한 집합투자증권, 수익증권 또는 집합투자증권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통화로 표시되어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것
2)	장내파생상품	-	법 제5조제2항에 의한 장내파생상품(해외 파생상품 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을 포함)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다른 파생상품을 포함하여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하가 되도록 함
3)	장외파생상품	-	법 제5조제3항에 의한 장외파생상품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다른 파생상품을 포함하여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하가 되도록 함
4)	증권의 대여	50% 이하	투자신탁이 보유한 증권 50% 이내로 증권 대여 가능
5)	환매조건부 매도	50% 이하	투자신탁이 보유한 증권 총액의 50% 이하로 환매조건부 매도 가능
6)	증권의 차입	20% 이하	1)의 규정에 의한 증권 차입
7)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8)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음 가.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함) 나.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다.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함)
<p>※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1)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아래의 ④ 및 ⑤의 경우에는 투자비율 적용 예외 기간을 15일 이내로 함.</p> <p>①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간</p> <p>②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p> <p>③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p> <p>④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p> <p>⑤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1)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p>	
<p>※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위의 4),5),6)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다만,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가 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p> <p>①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p> <p>② 투자신탁의 일부해지</p> <p>③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p> <p>④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p> <p>⑤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p>	

- 주1) 상기 투자비율은 투자자산별 투자금액(파생상품의 경우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적용)이 투자신탁 자산총액(파생상품의 경우 상품별로 달리 적용)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산출합니다.
- 주2) 투자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 및 신탁계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투자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투자제한의 내용	예외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을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 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집합투자재산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거래. 단,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와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음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함)	
동일회사 기초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파생상품매매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동일 거래상대방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같은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 및 같은 집합투자증권에 투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집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자

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호 본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다.

가.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것만 해당한다)의 집합투자채산을 외화자산으로 100분의 70이상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것만 해당한다)의 집합투자채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라.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때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채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마.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의2호에 따른 사모투자채간접 집합투자기구가 같은 집합투자업자(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이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79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제2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이나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채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

	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같은 집합투자증권에 투자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함). 단,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는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사모집합투자증권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만,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투자한도 초과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위의 투자한도(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제외)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라.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장외파생상품매매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다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집합투자증권 보수 및 수수료등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외국 투자매매업자를 포함한다) 또는 투자중개업자(외국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77조제4항의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후순위채권에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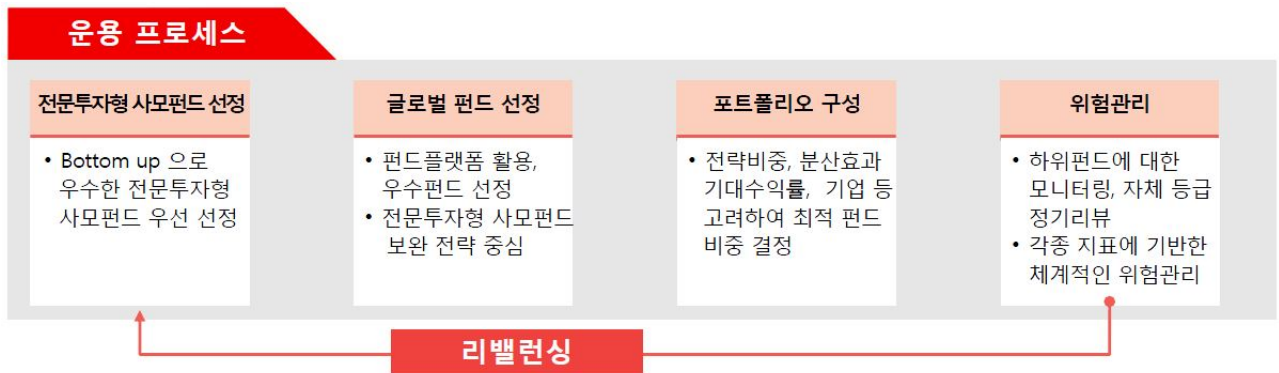
주) 투자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 및 신탁계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가. 투자 전략 및 위험 관리

(1) 투자 전략 개요

- 1) 이 투자신탁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분산 투자**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가치 상승 등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
- 2) 엄선된 국내 사모펀드에 주로 투자하되, 안정적인 위험조정 수익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의 글로벌 공모형 헤지펀드에도 분산 투자합니다.



(2) 투자대상 펀드 선정 프로세스

1) 국내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선정

- ① 초기 스크리닝 : 운용사 규모, 운용기간, 전략 등 자체 선별기준下 스크리닝하여 600여개의 한국형 헤지펀드 중 약 150개 펀드 도출
- ② 정량분석 : 헤지펀드 전략에 적합한 정량지표(절대수익률, 변동성, 위험조정수익률, 하락위험, 자금흐름 등)를 활용해 약 50여개 펀드 선정
- ③ 정성분석 : 현장실사를 포함한 엄격한 정성분석(운용팀 인터뷰를 통한 요인분석, 운용사 안정성, 위험관리 및 컴플라이언스 등)을 통해 약 15개 펀드 선별
- ④ 유니버스 : 자체 등급 부여 및 투자가능 펀드 상시 관리 (Pool: 10~20개)

[참고]국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선별 기준 상세

- 운용사 규모: 순자산 기준 1,000억원 이상
- 펀드 규모: 순자산 기준 100억원 이상
- 존속 기간: 펀드 1년 이상, 운용사 2년 이상
(단, 신생운용사인 경우 운용역 과거 Track Record 등을 기반해 선별 투자 가능)
- 레버리지 한도: 레버리지 비율 400% 이내 혹은 VaR기준 25% 이하
- 보수 한도: 운용보수 연 2% 이내 / 성과보수 연간 초과수익의 20% 이내
- 펀드의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달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투자대상펀드의 운용전략 특수성, 운용역량 등을 감안하여 상기 조건에 대한 예외 적용 가능

2) 글로벌 펀드 선정

- ① 초기 스크리닝 : 당사 펀드 플랫폼을 통해 13,000여개의 UCITS 헤지펀드 전략 펀드 중 약 1,200여개 스크리닝 - 법적 구조, 규모, 전략 등 자체 선별 기준 적용
- ② 정량분석 : 헤지펀드 전략에 적합한 정량지표(절대수익률, 변동성, 위험조정수익률, 하락위험, 자금흐름 등)를 활용해 100여개 펀드 선정
- ③ 정성분석 : 현장실사를 포함한 엄격한 정성분석(운용팀 인터뷰, 운용사 안정성, 위험관리 및 컴플라이언스 등)으로 50여개 펀드 선별
- ④ 유니버스 : 자체등급 부여 및 투자가능 펀드 상시 관리(Pool: 10~30개)

※ 투자대상 펀드의 유니버스를 선정한 후, 정량적/정성적 분석자료 등을 활용하여 사전 점검 사항을 작성합니다. 이들 점검사항 등에 대하여 해당 투자대상 펀드의 운용사를 방문하여 실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참고]투자대상펀드의 운용사 실사(Due Diligence) 점검 사항

- 투자 전략: 공표된 전략과 실제 투자 사례를 분석 비교, 실제 투자전략 파악
- 운용 Team: 핵심인력 파악, 팀의 특성, Interest Align 및 잠재적 이해 상충 등
- 운용 프로세스: 체계적, 투명한 투자 의사결정 과정 및 위험관리 기능 보유여부
- 운용 인프라: 포트폴리오 운용 및 리스크 관리에 필요한 인프라 보유여부
- 펀드 세부사항: 수수료 및 비용, 서비스 제공회사 및 선정 기준, 투자자 구성 등

※ 해외펀드도 운용사 실사를 시행하나, 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펀드 편입 이후 사후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3) 투자대상 펀드 선정

- 상기 프로세스를 통해 선정된 국내 사모펀드와 글로벌 공모펀드로 투자 유니버스 선정

투자 유니버스 (예시)			
전략분류	펀드	Key Factors	
글로벌 매크로	Discretionary (F & Credit)	LMWAGM	• Unconstrained global-macro fixed income 전략 • Dynamic한 duration, yield curve, volatility 운용
	Discretionary (F & Currency)	H2O	• 선진 및 이머징 시장 국제와 통화 시장에 주로 투자 • 변동성이 높으나, 주식시장과 상관관계 매우 낮음
	Discretionary (EM Credit)	EEARD	• 확신도 높은 8~12개 테마로 포트폴리오 구성 • EM 시장 국제 및 회사채에 대한 long bias 전략
주식 롱숏	L/S (Market Neutral)	QD	• 아시아 중심으로 글로벌 주식에 분산투자 • Net Exposure 가 10~30% 수준
	L/S (Long Biased)	J	• 일등주 중심으로 Long Position 구축(Main) • Sub 전략으로 롱숏전략 사용하고 기술적 지표 활용하여 선물을 활용한 헷지 전략 실행
	L/S (Long Biased)	M	• 펀더멘털 리저치를 통한 압축 포트폴리오 (30종목 내외) • 10%이내에서 공모주, E/D 투자, 선물활용한 헷지 전략
Multi	L/S +RV	S	• 철저한 Market Neutral 롱숏 포트폴리오 • 채권을 활용한 RV 전략 명함하여 변동성 제어
	L/S + E/D	B	• L/S, GM, E/D, RV 등 다양한 전략을 사용 • 설정후 우수한 성과를 시현하고 있으나 회사규모 등 안정성 확인 필요
Event Driven	Event Multi	Helium Performance	• Merger Arbitrage, Special Situation 등 투자 • 주로 Merger Arbitrage가 성과의 원천

(3) 포트폴리오 구성

- 1) 국내 사모펀드 시장의 특성을 반영하되, 低유동성/高위험자산 투자전략 등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배제하고, 특정 전략에 집중되지 않도록 전략별 비중을 배분합니다.

※ 전략 비중 예시 : Equity 롱/숏 45%, 글로벌 매크로 24%, 멀티전략 15%, Event Driven 10%

[참고] 주요 전략 소개

- Equity 롱/숏: 글로벌, 지역, 국가, 섹터 별 주식 롱숏 포지션에 투자하는 전략
- 글로벌 매크로: 광범위한 국가, 산업, 환, 이자율, 원자재 등에 롱숏 포지션을 구축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
- Event Driven: M&A, 자산이전, 공개매수, 자본재구조화, 청산, 기업분할 등 다양한 종류의 기업 이벤트에 주로 투자하는 전략
- 상대가치: 자산간 가격 비효율성을 이용하여 투자하는 전략
- 멀티전략: 두 개 이상의 상위 전략을 사용

2) 전략 내 하위펀드 비중은 포트폴리오의 목표 Risk/Return Profile 달성이 가능하도록 배분하되, 펀드별 상관관계를 고려합니다.

3) 펀드별 위험조정수익률 등을 감안하여 동일 전략내 펀드 비중을 조정합니다.

(4) 모니터링 및 리밸런싱

1) 하위펀드의 실적 및 위험 지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2) 정기 및 수시 리밸런싱을 검토, 시행합니다.

- 리스크 관리 모니터링 및 리뷰 (예시)

	매주, 매월	분기, 연간
성과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변동 Monitoring (일간) • Strategy별 성과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 기여도 분석 (Contribution) • 전략별, 자산별, 지역별 성과요인분석 (Attribution)
Risk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isk 관련 지표 Monitoring (주간) • 하위 펀드 성과 및 리스크 리뷰 (월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용현황 In-depth Overview • Return based Risk review (변동성 분석, VaR, Beta, MDD 등) • Investment Strategy Review

(5)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본 투자신탁이 국내 사모펀드 및 글로벌 공모펀드 등에 투자할 예정으로 이 투자신탁의 전략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비교지수가 존재하지 않고, 특정지수를 추종하거나 초과하는 목적으로 운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교지수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6) 이 투자신탁은 해외펀드 편입에 따라 USD, EUR, GBP 등의 통화에 대한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이러한 환율변동위험에 대한 헷지 전략의 수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헷지 수단인 통화관련 장내 또는 장외파생상품의 급격한 가격 변동 및 외환관련 파생시장 혼란 발생시 등에는 헷지 거래가 전액 또는 일부 실행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외환시장의 상황, 투자신탁의 규모, 해당 통화 거래의 기초 여건 및 헷지 수단 등의 영향으로 투자신탁재산 일부 또는 전부가 환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외부적인 요건을 고려하여 운용역의 판단으로 일정기간 환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7) 이 투자신탁의 환헤지 전략에 따른 목표 환헤지 비율과 환헤지가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목표	펀드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단위 : %)	
	기준일 현재 환헤지 비율	기준일 현재 환노출 비율
외화표시자산의 80-110	90.56	9.44
	환율변화와 반대방향의 손익이 발생한 비율	환율변화와 동일한 방향 손익이 발생한 비율

주1) 환헤지란 선물환계약, 한국거래소 통화선물 등 통화관련 파생상품 등을 이용하여 환율 변동으로 인한 외화표시자산 등의 가치 변동을 줄이는 것을 말하며, 환헤지 비율은 기준일 현재 펀드에서 보유하고 있는 총 외화표시자산 등의 평가액 대비 환헤지 규모를 비율로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주2) 목표한 환헤지 비율은 시장상황, 투자수단의 유용성에 따라 사전에 별도의 고지 없이 운용역의 판단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장외파생상품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활용하여 환헤지 전략을 수행하는데 시장상황에 따라 장외파생상품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조합하거나 어느 한쪽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환헤지에 따른 비용을 산출함에 있어 장내파생상품을 활용하는 경우는 증거금 및 수수료 등 비용이 정형화 되어 있어 비용 산출이 가능하나, 장외파생상품은 장외거래 특성상 수수료 등 비용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계약환율 자체에 이미 비용이 반영되어 있어 비용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환헤지 전략의 특성상 장내파생상품의 환헤지 비용만을 표시할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될 수 있으므로 환헤지에 따른 비용을 별도로 산출하지 않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는 작성 시점 현재의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작성된 것으로 시장 상황의 변동이나 당사 내부기준의 변경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내용은 변경 등록(또는 정정 신고)하여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나. 수익구조

- 해당사항 없음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편입 자산의 실적에 따라 투자신탁의 실적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 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기간 중에 환매한 경우에는 환매수수료의 부과로 인해 투자손실이 발생하거나 손실의 폭이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투자위험은 본 자료 작성시점 현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이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 일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이 투자신탁은 그 투자신탁재산을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국내외 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증권의 가격변동, 거시경제지표 등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특히 해외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해당 국가의 경제전망, 환율변동 등 해외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의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통화관련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환위험을 회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미 실현 손익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환 헷지 비율을 조정하여 최대한 환 위험을 회피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관련 시장 규모, 거래비용, 투자수단의 유용성, 시장간의 시차, 관련 시장의 교란 및 전세계 거시 경제적인 기타 변수등에 따라 환 위험을 회피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헷지를 하는 경우에도 투자신탁 설정·해지의 반복, 가격변동, 최소 환헷지거래규모 등으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외화자산의 환위험에 대하여 100% 헷지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신탁 순자산액±일정 범위에서 환헷지가 이루어집니다. 이에 따라 환헷지를 하는 경우에도 투자신탁 순자산액에 미달되거나 초과되는 부분은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나. 특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일부 투자국가 증권의 경우 외국인의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증권시장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 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 집합투자증권에도 투자하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 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에 노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집합투자증권 등이 특정국가에서 거래됨에 따라 특정 외국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국가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 배당소득, 세후 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의 성과와 운용방법 등에도 유사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 투자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은 주식, 채권, 원자재 등 다양한 자산을 편입하는 국내외 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피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산 가격하락 등에 따라 투자 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기간내에 불가피하게 중도환매를 하는 경우 환매수수료 부담이 발생하여 당해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으며, 다른 투자신탁보다 일반적으로 환매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

<p>집합투자증권 투자에 따른 위험</p>	<p>증권은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기간의 시차를 두고 평가에 반영됩니다. 그 결과 당해 투자신탁에 대하여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일정기간 이전 가격으로 평가된 가격입니다. 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 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해외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산인 외국 증권의 가격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요 운용전략의 상세한 내역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p>
<p>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에 따른 위험</p>	<p>이 투자신탁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입니다. 주요 투자대상인 전문투자형 사모 집합투자증권은 공모 집합투자기구에서 적용되는 공시의무 등이 법령상 배제되어 운용과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공모집합투자기구에서 적용되는 운용규제 등이 완화되거나 배제되어 더 많은 투자위험이 존재할 수 있어 투자결과에 따라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 사모집합투자증권의 파생상품 위험 평가액 및 금전차입 한도는 최대 400%까지 허용되고, 공모집합투자증권에서 적용되는 분산투자 등의 운용제한 요건이 배제되어 특정종목 또는 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이 현저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p> <p>* 일반 사모집합투자증권에서 적용 배제되는 주요 운용 규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종목 증권 투자제한 (10%) -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제한 (100%) - 동일 집합투자업자 운용 집합투자증권 편입제한 (50%) - 각 집합투자기구의 같은 집합투자증권의 편입제한 (20%) - 각 집합투자기구에 편입하는 같은 집합투자증권 총수 제한 (20%) - 증권의 대여 제한 (50%) - 증권의 차입 제한 (20%)
<p>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산정위험</p>	<p>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증권은 시가가 없는 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자산의 시가가 없는 경우 일반 사모집합투자증권은 공정가격으로 평가하여 기준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나, 공정가격이 시장가격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일반 사모 집합투자증권은 매일 기준가격을 산출하지 않고 일정기간(주간, 월간 등) 동안 1번씩 기준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투자형 사모 집합투자증권이 투자하는 자산의 가치가 적시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은 투자자산이 공정가격으로 평가되는 경우 또는 적시에 산출되지 않는 경우 등으로 인해 이 집합투자기구에서 설정 및 환매가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별로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증권 성과보수 부과에 따른 가치변동 위험</p>	<p>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증권은 성과보수가 부과될 수 있어, 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 대비 더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성과보수는 운용수익률에 연동하여 환매 또는 결산시점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성과가 좋을수록 더 높은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게 되므로 투자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증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피투자 집합투자증권의 성과보수를 차감하지 않은 기준가격을 산출하며, 피투자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또는 결산시점이 도래할 경우 성과보수 지급에 따른 가치하락 위험이 존재할 수 있고, 투자자가 환매를 하는 경우에도 피투자 집합투자증권 환매에 따른 성과보수 발생으로 투자자가 예상한 수익률보다 낮은 수익률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피투자 집합투자증권 중 투자이익이 발생한 집합투자증권에서는 성과보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자의 투자손실은 더 확대될 수 있습니다. 즉, 피투자 집합투자증권이 성과보수를 부과하는 경우 투자자의 예상보다 실제 환매 시 낮은 수익률이 실현될 수 있으며, 성과보수를 부과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에 투</p>

전문투자형 사모집합 투자증권 성과보수 부과에 따른 가치변 동 위험	자하는 것보다 실현되는 수익률의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전문투자형 사모집합 투자증권 투자에 따 른 환매주기 관련 위 험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증권은 일반 공모집합투자증권과는 달리 매일 설정 및 환매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투자대상 자산의 유동성 제약 등을 이유로 환매 청구 시점부터 환매대금 지급일까지의 환매주기가 오랜 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환매주기도 일반적인 투자신탁보다 길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간 내에 투자자금을 유동화하기를 원하거나, 오랜 환매기간 동안 발생될 수 있는 가치변동 위험을 원치 않는 투자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문투자형 사모집합 투자증권 투자에 따 른 환매 시 가치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은 특정 투자자의 환매에 따른 피투자 일반 사모집합투자증권 매도 시 성과보수 또는 환매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어, 이 투자신탁 전체의 가치하락 및 잔존수익자의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에서는 이와 같은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와 잔존수익자 간의 이해상충 문제를 일정부분 완화하기 위하여, 투자자가 환매를 요청하는 경우 투자신탁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금액을 기준으로 환매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가 환매를 하는 경우 투자자의 수익률은 환매수수료 부과에 따라 예상보다 하락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환매수수료 부과로 손실폭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때 부과된 환매수수료는 투자신탁재산으로 귀속됩니다.
소규모펀드 관련 위 험	집합투자기구의 최초설정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 원본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없이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모자형 펀드로 변경하고 모투자신탁이 "삼성솔루션글로벌알파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현재 기준)으로 변경되며,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에는 임의해지 하거나 수익자총회 없이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투자대상 모투자신탁이 "삼성솔루션글로벌알파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현재 기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위험	이 투자신탁은 파생상품 투자에 따른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과 편입중인 고난도집합투자증권의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상품 투자로 인한 최대 원금손실 가능 금액의 합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합니다.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은 그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큰 금융투자상품을 의미하며 투자자는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숙려기간 등의 권리가 보장됩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 위험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증권의 투자대상 자산의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하거나, 매각이 어려운 자산인 경우 투자자산의 유동성 부족에 따라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자가 환매 요청 시 집합투자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 환매수수료는 투자신탁재산으로 귀속됩니다.
오퍼레이션 위험	해외투자의 경우 국내투자자와 달리 시차에 의한 시장폐장 및 개장시간의 차이로 인해 신탁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퍼레이션 위험이 국내투자보다 더 높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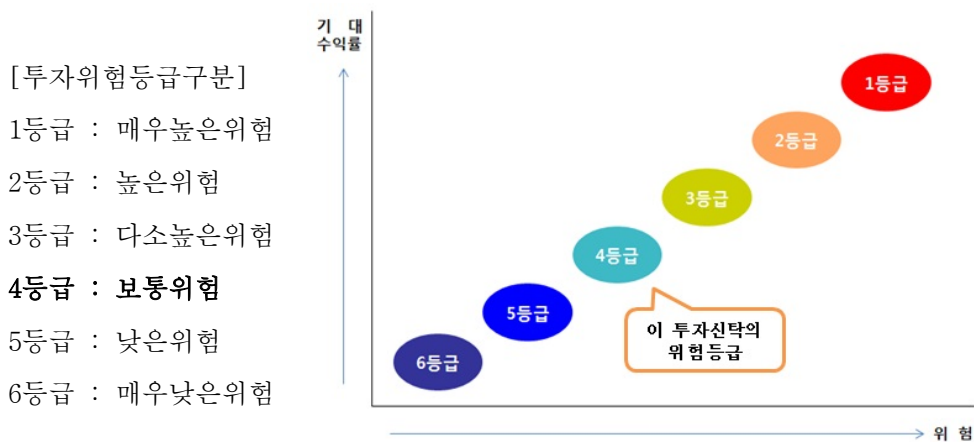
환매연기위험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투자설명서 “제2부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신탁 해지 위험	투자신탁이 최초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최초로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사전 동의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 또는 해산할 수 있습니다.
과세 위험	과세당국에서 인식하는 투자에 따른 손익은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과세손익은 수익이 있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이를 손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비과세대상자산에서 손실을 본 경우라도 과세대상자산에서는 발생한 수익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전체 투자결과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세대상자산의 예: 해외투자 시 이익 및 환차손익, 채권투자 시 이자수익 등 * 비과세대상자산의 예: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 등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일반 사모 집합투자증권 주로 투자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가치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

※ 일반 사모집합투자증권은 공모 집합투자기구에 적용되는 운용규제 등이 법령 상 배제되어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 레버리지 전략을 구사할 수 있어 손실폭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 공시 의무를 적용받지 않아 투자자산 등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재무적 지식을 충분히 보유한 투자자에게 적합한 고위험 상품입니다.

-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투자위험 등급을 산정하였습니다. 추후 매 결산 시마다 수익률 변동성을 다시 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 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6등급 중 4등급**에 해당되는 보통 위험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투자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동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위험등급 기준표(연환산 표준편차 기준)>

등급	1(고위험)	2	3	4	5	6(저위험)
표준편차	25%초과	25%이하	15%이하	10%이하	5%이하	0.5%이하

- 주1) 실제 변동성은 매년 결산시점에 측정하며, 해당 결산일 기준 이전 3년(156주)간 펀드의 주간 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와 등급 기준표상의 표준편차 상한치를 비교합니다.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해당 운용펀드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정)
- 주2) 이 투자신탁의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실제 연환산 표준편차는 **6.28%** 입니다.
- 주3) 추후 매 결산시마다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4) 이 투자위험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 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 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도 가능합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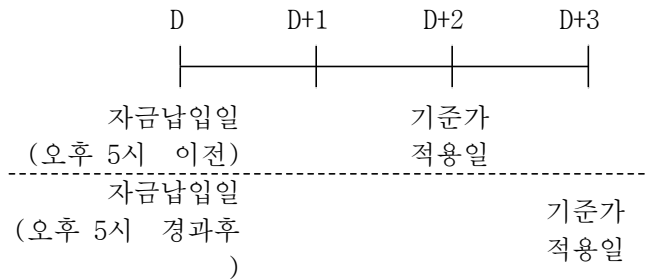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의 가입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클래스 명칭	가입자격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가입제한이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수수료선취-온라인(Ae)	온라인(On-Line) 가입자 전용. 선취판매수수료 징구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법제8조제5항에 따른 투자자문업자로부터 법제6조제6항에 따른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매수를 요청하거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법제9조제4항에 따른 투자권유 없이 본 집합투자증권의 매입하는 투자자 전용. 선취판매수수료 징구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가입제한이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온라인(On-line) 가입자 전용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법제8조제5항에 따른 투자자문업자로부터 법제6조제6항에 따른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매수를 요청하거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법제9조제4항에 따른 투자권유 없이 본 집합투자증권의 매입하는 투자자 전용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10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전용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30억원 이상 매입하는 가입자 전용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Wrap ACCOUNT, 특정금전신탁, 보험업법 상의 특별계정 가입자 전용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클래스 명칭	가입자격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온라인(On-Line)전용 수익증권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 후취판매수수료 징구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1)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납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2) **오후 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납입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3)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나. 환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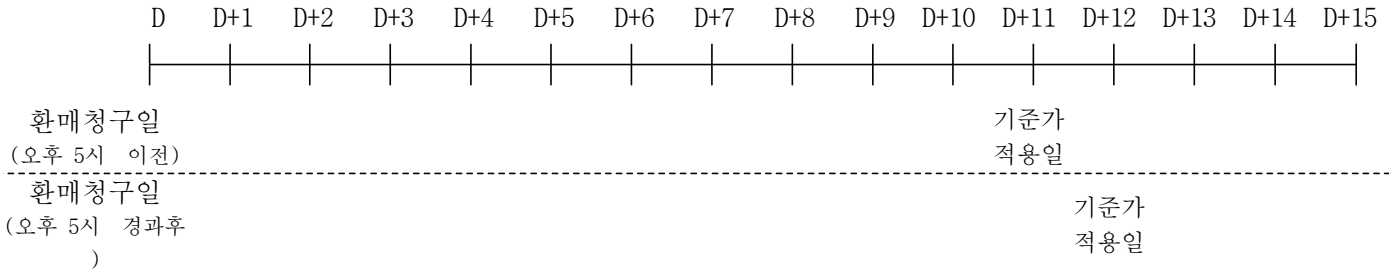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또한 판매회사에서 이 투자신탁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해서도 환매가 가능합니다 .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환매기준일: 매주 수요일(단,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익영업일)

- 1) 환매기준일의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기준일**로부터 **제12영업일(D+1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18영업일(D+17)**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2) 환매기준일의 **오후 5시 경과 후부터 다음 환매기준일의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다음 환매기준일**로부터 **제12영업일(D+1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18영업일(D+17)**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3)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부과하며, 부과된 수수료는 투자신탁의 재산으로 편입됩니다. 환매수수료는 포트폴리오 재조정 등을 위한 비용의 증가를 이유로 부과하는 것이며, 이는 투자자의 환매금액 감소를 가져오게 됩니다.

구분	환매수수료	비고(지급시기)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6개월미만: 환매금액의 1.0%, 6개월이상: 없음	환매시
수수료선취-온라인(Ae)	6개월미만: 환매금액의 1.0%, 6개월이상: 없음	환매시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6개월미만: 환매금액의 1.0%, 6개월이상: 없음	환매시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6개월미만: 환매금액의 1.0%, 6개월이상: 없음	환매시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6개월미만: 환매금액의 1.0%, 6개월이상: 없음	환매시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6개월미만: 환매금액의 1.0%, 6개월이상: 없음	환매시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6개월미만: 환매금액의 1.0%, 6개월이상: 없음	환매시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6개월미만: 환매금액의 1.0%, 6개월이상: 없음	환매시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6개월미만: 환매금액의 1.0%, 6개월이상: 없음	환매시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6개월미만: 환매금액의 1.0%, 6개월이상: 없음	환매시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6개월미만: 환매금액의 1.0%, 6개월이상: 없음	환매시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6개월미만: 환매금액의 1.0%, 6개월이상: 없음	환매시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6개월미만: 환매금액의 1.0%, 6개월이상: 없음	환매시

주) 단 채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합니다.

※ 투자자는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 저축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저축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하는 목적식 투자자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오후 5시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증권에 대하여 일부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해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 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16영업일 전일 (환매기준일의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다음 환매기준일로부터 제16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 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로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개최하여 법 시행령 제257조의 사항을 결의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1)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2)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청받은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4) 1) 내지 3)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환매연기에 따른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다.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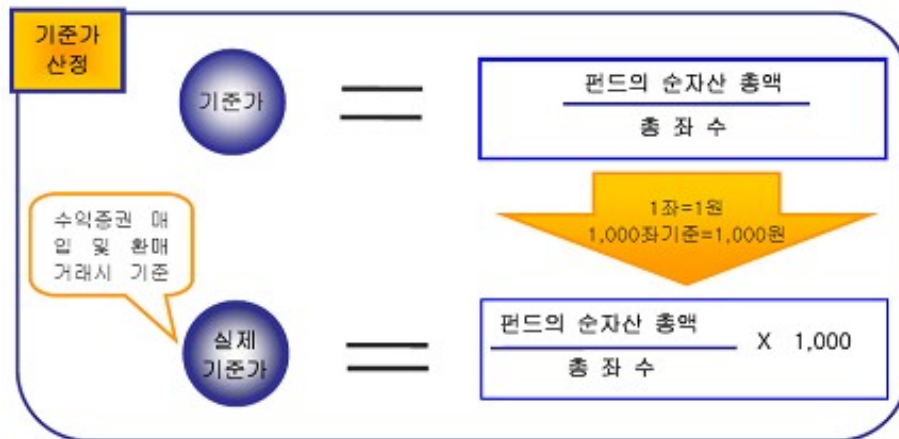
- 해당사항 없음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산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 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 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합니다.
종류간 기준이 상이한 이유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http://www.samsungfund.com)·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주)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일 10일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은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비상장채권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외화표시채무증권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외화표시상장주식	평가기준일 전날의 최종시가로 평가
외화표시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상장수익증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수익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 다만,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모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산출된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
외화표시수익증권	평가기준일의 컷오프 시간(18시) 이내에 발행회사, 가격산정전문회사 또는 증권정보증개기관(블룸버그, 로이터 등) 등이 공고하거나 제공한 최근일의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외국 증권시장에서 상장된 외화표시 수익증권은 그 외화표시 수익증권이 거래되는 시장의 평가기준일 전날 최종시가로 평가
장내파생상품	평가기준일에 당해 장내 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에서 공표하는 가격(해외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날에 공표되는 가격)으로 평가
장외파생상품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또는 당해 장외파생상품 발행 및 계산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2)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업무

- 1) 구성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담당임원, 준법감시인, 리스크관리 담당임원 및 기타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 2) 업무 :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 평가에 대한 필요사항을 의결함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보수 및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수익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클래스종류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 판매수수료	후취 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전환수수료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제한없음	납입금액의 1.0%이내	-	6개월미만: 환매금액의 1.0%, 6개월 이상: 없음	-
수수료선취-온라인(Ae)	선취징구 온라인 용	납입금액의 0.5%이내	-	6개월미만: 환매금액의 1.0%, 6개월 이상: 없음	-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 비용(Ag)	투자자문을 받거 나 투자권유 없이 수익증권을 매수 하는 고객 전용으 로 선취판매수수 료가 징구되는 수 익증권	납입금액의 0.7%이내	-	6개월미만: 환매금액의 1.0%, 6개월 이상: 없음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제한없음	-	-	6개월미만: 환매금액의 1.0%, 6개월 이상: 없음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온라인용	-	-	6개월미만: 환매금액의 1.0%, 6개월 이상: 없음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 저비용(Cg)	투자자문을 받거 나 투자권유 없이 수익증권을 매수 하는 고객 전용 수익증권	-	-	6개월미만: 환매금액의 1.0%, 6개월 이상: 없음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Cf)	집합투자기구 등	-	-	6개월미만: 환매금액의 1.0%, 6개월 이상: 없음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Ci)	30억 이상 가입자	-	-	6개월미만: 환매금액의 1.0%, 6개월 이상: 없음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Wrap 계좌전용 등	-	-	6개월미만: 환매금액의 1.0%, 6개월 이상: 없음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 금(C-P)	연금저축 전용	-	-	6개월미만: 환매금액의 1.0%, 6개월 이상: 없음	-

클래스종류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 판매수수료	후취 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전환수수료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C-Pe)	연금저축 온라인 용	-	-	6개월미만: 환매금액의 1.0%, 6개월 이상: 없음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온라인 판매시스 템에 회원으로 가 입한 투자자 전용	-	3년 미만 환 매시 환매금 액의 0.15%이 내	6개월미만: 환매금액의 1.0%, 6개월 이상: 없음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 연금(S-P)	온라인 판매시스 템에 회원으로 가 입한 투자자 전용 (연금전용)	-	-	6개월미만: 환매금액의 1.0%, 6개월 이상: 없음	-
부과기준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주1) 환매수수료의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 기준으로 징구됩니다.

주 선취, 후취 판매 수수료율은 상기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별로 차등
2)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차등적용의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가입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2)종류별 가입자격
3) 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1) 투자신탁 관련 보수등

클래스종류	지급비율(연간,%)									
	집합투자 업자 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	총 보수	기타 비용	총 보수 · 비용	동종유형 총 보수	총 보수 · 비용(피 투자 집합 투자기구 보수포함)	증권 거래비용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0.40	0.55	0.03	0.00	0.98	1.0928	2.0728	0.88	3.1328	0.00
수수료선취-온라인(Ae)	0.40	0.27	0.03	0.00	0.70	실비	0.70	0.61	1.76	실비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Ag)	0.40	0.38	0.03	0.00	0.81	실비	0.81	-	1.87	실비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0.40	0.90	0.03	0.00	1.33	1.0947	2.4247	0.99	3.4847	0.00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0.40	0.45	0.03	0.00	0.88	1.1021	1.9821	0.77	3.0421	0.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Cg)	0.40	0.63	0.03	0.00	1.06	실비	1.06	-	2.12	실비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0.40	0.03	0.03	0.00	0.46	1.1407	1.6007	-	2.6607	0.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0.40	0.27	0.03	0.00	0.70	실비	0.70	-	1.76	실비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0.40	0.00	0.03	0.00	0.43	실비	0.43	-	1.49	실비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0.40	0.81	0.03	0.00	1.24	실비	1.24	-	2.30	실비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0.40	0.40	0.03	0.00	0.83	실비	0.83	-	1.89	실비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0.40	0.25	0.03	0.00	0.68	1.3787	2.0587	-	3.1187	0.00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0.40	0.20	0.03	0.00	0.63	실비	0.63	-	1.69	실비
지급시기	최초설정일로부터 매3개월 후급					사유 발생시	-	-	-	사유 발생시

- 주1) 총보수·비용비율은 순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기타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한 것입니다.
- 주2)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제외)으로 다음과 같은 비용을 포함합니다.
- 예탁 및 결제비용, 회계감사비용, 채권평가보수, 펀드평가보수, 지수사용료, 보관대리인 보수, 법률자문비용, 부동산감정평가보수 등
-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작성하였으므로 실제비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신탁(클래스 포함)인 경우 수치화된 추정치 비율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펀드를 편입하는 경우 확정된 성과보수는 기타비용으로 분류하였습니다.

- 주3) 증권거래비용은 다음과 같은 비용을 포함합니다.
- (국내자산) 상장 또는 등록주식 매매수수료, 장내파생상품 매매수수료, 장외 ELW/ELS 거래수수료, 현금 중개수수료, 대차 또는 대주, Repo 거래 중개수수료 등
 - (해외자산) 주식, 채권, 선물, 장외파생, 기타 Forward 매매수수료 등
-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을 연환산한 비율 추정치로 작성되었으므로 실제 비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신탁인 경우 수치화된 비율 및 금액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한 증권거래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발생 내역, 천원)
증권거래비용	0

- 주4) 금융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금융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계산이 가능한 금융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투자신탁이거나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신탁인 경우 금액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한 금융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발생 내역, 천원)
금융비용	-

※ 회계기간 중 금융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회계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직전 회계연도의 발생 비용을 기재할 예정입니다.

- 주5)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 비용을 의미합니다.

- 주6) 총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기준으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투자신탁(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을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 등을 합산하여 산출한 것으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비율이나 보수 등은 초기 포트폴리오 구성 과정에서 계산된 예상수치입니다. 다만,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 기타비용 등을 알 수 없을 경우 또는 투자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 경우에는 총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비율을 산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주6)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증권은 운용실적에 따라 성과보수를 받는 보수 체계인 경우가 있으므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기 피투자 집합투자증권의 보수에는 성과보수가 포함되지 않아 성과보수가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가 실제 부담하게 되는 총보수·비용은 증가하게 됩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단위: 원)

클래스종류	투자기간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410,146	728,629	1,063,037	1,782,848	3,921,92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305,206	515,928	737,187	1,213,445	2,628,748
수수료선취-온라인(A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225,120	404,947	593,766	1,000,199	2,207,999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19,650	191,172	266,271	427,920	908,295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255,691	446,374	646,590	1,077,557	2,358,265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50,433	233,028	319,753	506,428	1,061,17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348,473	706,314	1,082,047	1,890,812	4,294,228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42,473	491,465	752,906	1,315,657	2,987,992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304,210	616,597	944,604	1,650,639	3,748,770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98,210	401,748	615,463	1,075,484	2,442,53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212,000	429,699	658,283	1,150,309	2,612,471

클래스종류	투자기간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 저비용(Cg)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06,000	214,849	329,141	575,155	1,306,23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Cf)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 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266,066	539,284	826,163	1,443,671	3,278,725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60,066	324,435	497,022	868,516	1,972,48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객 (Ci)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 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76,000	356,731	546,499	954,974	2,168,844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70,000	141,882	217,357	379,819	862,60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 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49,000	302,005	462,661	808,472	1,836,123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43,000	87,156	133,520	233,317	529,88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 금(C-P)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 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230,000	466,183	714,175	1,247,977	2,834,284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24,000	251,333	385,033	672,822	1,528,049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C-P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 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89,000	383,081	586,865	1,025,512	2,329,04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83,000	168,231	257,724	450,357	1,022,807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 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326,405	646,182	981,947	1,704,681	3,852,439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20,564	431,654	653,299	1,130,389	2,548,164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 연금(S-P)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 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69,000	342,543	524,763	916,992	2,082,583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63,000	127,694	195,622	341,837	776,347

주)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 (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 + 피투자펀드보수)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되, 기타비용(증권거래 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이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투자펀드보수는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기준으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신탁(모투자신탁 포함)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하여 산출한 피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산한 것입니다. 다만, 해당 보수 및 기타비용을 알 수 없는 경우, 산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주) **종류 A형과 종류 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9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8개월이 되는 경과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후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클래스는 해당 후취판매수수료율을 반영한 값으로 3년 이상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은 감소합니다.

(2) 투자신탁 관련 비용

- 1)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의 매매수수료
- 2)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 5)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 7) 증권 및 파생상품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 비용
- 9) 증권 및 파생상품 등 자산의 투자정보 비용
- 10) 해외보관대리인 관련비용
- 11)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 해외보관대리인 관련 비용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당 결제비용(transaction fee)
2. 보관비용(safe-keeping fee)
3. 기타 부수비용(out-of-pocket expenses: physical registration, DR conversion, tax reclaim, income collection 등)

다. 보수 및 지급내역에 관한 사항

다음 표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65조 제1항 제2호의 방식에 따라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를 수취하는 투자신탁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기준지표	보수 산정방식	한도 (%)	산출 주기	지급시기	지급내역 (직전 회계연도 기준, %)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	-	-	-	-	-	-	-	-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 (1)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는 해당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금전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 (2) 수익자는 (1)에 의하여 분배되는 이익금을 금전 등으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 (3)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 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4) 수익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 다음의 투자신탁 또는 수익자 관련 세무사항에 대한 안내는 참고용으로 제시된 것이며, 향후 세법의 변경 및 정부정책 변화 등의 사유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와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 1)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 2)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외국인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환급세액	=	외국납부세액	×	환급비율
환급비율 : (과세대상소득금액 / 국민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 > 1이면 1, 환급비율 < 0 이면 0으로 함.				

- 3)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1)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하는 날 및 신탁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한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1.4%)의 세율로 원천징수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3)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 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수령 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 공제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2% · 종합소득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500만원 이하)는 납입액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5% · 종합소득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1억 2,000만원 초과)는 납입액 3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2% 단,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이연퇴직소득세액 X 70%' 적용
분리과세 한도	연간 1,200만원(공적연금소득 제외, 퇴직소득 제외)
연금외 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해지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변경,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이 300억미만으로 외부회계법인의 감사대상이 아닙니다.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 백만원)

재무상태표			
항목	5기 (2022.12.17)	4기 (2021.12.17)	3기 (2020.12.17)
자산총계	19,580	21,739	22,613
운용자산	19,578	21,738	22,613
증권	18,489	20,363	22,092
파생상품	-27	-71	62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1,116	1,446	460
기타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1	0	0
부채총계	22	25	70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22	25	70
자본총계	19,558	21,714	22,544
원본	19,343	19,114	21,706
수익조정금	49	-336	546
이익잉여금	166	2,936	292

(단위 : 백만원)

손익계산서			
항목	5기 (2021.12.18~2022.12.17)	4기 (2020.12.18~2021.12.17)	3기 (2019.12.18~2020.12.17)
운용수익	-527	2,573	424
이자수익	16	4	2
배당수익	2,136	1,951	512
매매/평가차익(손)	-2,680	585	-90
기타수익	0	32	0
운용비용	321	134	129

항목	5기 (2021.12.18~2022.12.17)	4기 (2020.12.18~2021.12.17)	3기 (2019.12.18~2020.12.17)
관련회사 보수	320	133	127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1	1	2
당기순이익	-849	2,439	295
매매회전율	-	-	-

나. 재무상태표

(단위 : 백만원)

재무상태표			
항목	5기 (2022.12.17)	4기 (2021.12.17)	3기 (2020.12.17)
자산총계	19,580	21,739	22,613
운용자산	19,578	21,738	22,613
유가증권	18,489	20,363	22,092
지분증권	0	0	0
채무증권	0	0	0
수익증권	18,489	20,363	22,092
파생상품	-27	-71	62
현금및 예치금	1,116	1,446	460
현금및 현금성자산	1,116	1,446	460
증거금	0	0	0
대출채권	0	0	0
콜론	0	0	0
기타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1	0	0
매도유가증권미수입금	0	0	0
기타미수입금	0	0	0
미수이자	1	0	0
미수배당금	0	0	0
선급비용	0	0	0
기타미수수익	0	0	0
부채총계	22	25	70
운용부채	0	0	0
환매조건부채권매도	0	0	0

항목	5기 (2022.12.17)	4기 (2021.12.17)	3기 (2020.12.17)
미지급이자	0	0	0
기타부채	22	25	70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0	0	0
기타미지급금	0	0	41
미지급보수	22	25	29
기타미지급비용	0	0	0
미지급분배금	0	0	0
자본총계	19,558	21,714	22,544
원본	19,343	19,114	21,706
수익조정금	49	-336	546
이익잉여금	166	2,936	292
이월이익잉여금	-1,416	-2,024	-801
기지급이익분배금	0	0	0
당기순이익	-849	2,439	295
부채및 자본총계	19,580	21,739	22,613
총좌수	19,297	19,160	21,617
기준가격	1,011	1,136	1,039

다. 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손익계산서			
항목	5기 (2021.12.18~2022.12.17)	4기 (2020.12.18~2021.12.17)	3기 (2019.12.18~2020.12.17)
운용수익(손실)	-527	2,573	424
투자수익	2,153	1,988	514
이자수익	16	4	2
배당수익	2,136	1,951	512
기타수익	0	32	0
매매차익	44	1,193	1,013
파생상품매매이익	24	103	595
수익증권매매이익	20	1,090	61
외환거래매매이익	0	0	356
매매차손	-440	-517	-2,825
파생상품매매손실	-420	-182	-541

항목	5기	4기	3기
	(2021.12.18~2022.12.17)	(2020.12.18~2021.12.17)	(2019.12.18~2020.12.17)
수익증권매매손실	-20	-302	-2,191
외환거래매매손실	0	-33	-93
평가손익	-2,284	-90	1,722
파생상품평가손익	44	-133	-76
수익증권평가손익	-2,640	-189	2,172
외환거래평가손익	312	231	-374
운용비용	321	134	129
운용수수료	307	107	97
수탁수수료	6	7	7
판매수수료	7	18	23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1	1	2
당기순이익	-849	2,439	295
좌당순이익	-0.04	0.13	0.01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단위 : 억좌, 억원)

클래스종류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2021.12.18 ~2022.12.17	0	0	0	0	0	0	0	0
	2020.12.18 ~2021.12.17	2	2	0	0	2	2	0	0
	2019.12.18 ~2020.12.17	2	2	0	0	0	0	2	2
	2018.12.18 ~2019.12.17	2	2	0	0	0	0	2	2
수수료선취-온라인(Ae)	2021.12.18 ~2022.12.17	0	0	0	0	0	0	0	0
	2020.12.18 ~2021.12.17	0	0	0	0	0	0	0	0
	2019.12.18 ~2020.12.17	0	0	0	0	0	0	0	0
	2018.12.18 ~2019.12.17	1	1	0	0	1	1	0	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2021.12.18 ~2022.12.17	0	0	0	0	0	0	0	0
	2020.12.18 ~2021.12.17	1	1	0	0	1	1	0	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2019.12.18 ~2020.12.17	1	1	0	0	0	0	1	1
	2018.12.18 ~2019.12.17	2	2	0	0	1	1	1	1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2021.12.18 ~2022.12.17	1	1	0	0	0	0	0	0
	2020.12.18 ~2021.12.17	1	1	0	0	0	0	1	1
	2019.12.18 ~2020.12.17	1	1	0	0	0	0	1	1
	2018.12.18 ~2019.12.17	1	1	0	0	1	1	1	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 비용(Cg)	2021.12.18 ~2022.12.17	0	0	0	0	0	0	0	0
	2020.12.18 ~2021.12.17	0	0	0	0	0	0	0	0
	2019.12.18 ~2020.12.17	0	0	0	0	0	0	0	0
	2018.12.18 ~2019.12.17	0	0	0	0	0	0	0	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2021.12.18 ~2022.12.17	190	190	22	22	19	19	0	0
	2020.12.18 ~2021.12.17	161	161	80	80	51	51	190	190
	2019.12.18 ~2020.12.17	197	197	41	41	79	79	159	159
	2018.12.18 ~2019.12.17	210	210	38	38	52	52	196	19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2021.12.18 ~2022.12.17	0	0	0	0	0	0	0	0
	2020.12.18 ~2021.12.17	55	55	29	29	83	83	0	0
	2019.5.28 ~2019.12.17	30	30	17	17	0	0	47	47
	2019.12.18 ~2020.12.17	47	47	14	14	7	7	53	53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2021.12.18 ~2022.12.17	0	0	0	0	0	0	0	0
	2020.12.18 ~2021.12.17	1	1	0	0	1	1	0	0
	2019.12.18 ~2020.12.17	2	2	1	1	2	2	1	1
	2018.12.18 ~2019.12.17	4	4	0	0	2	2	2	2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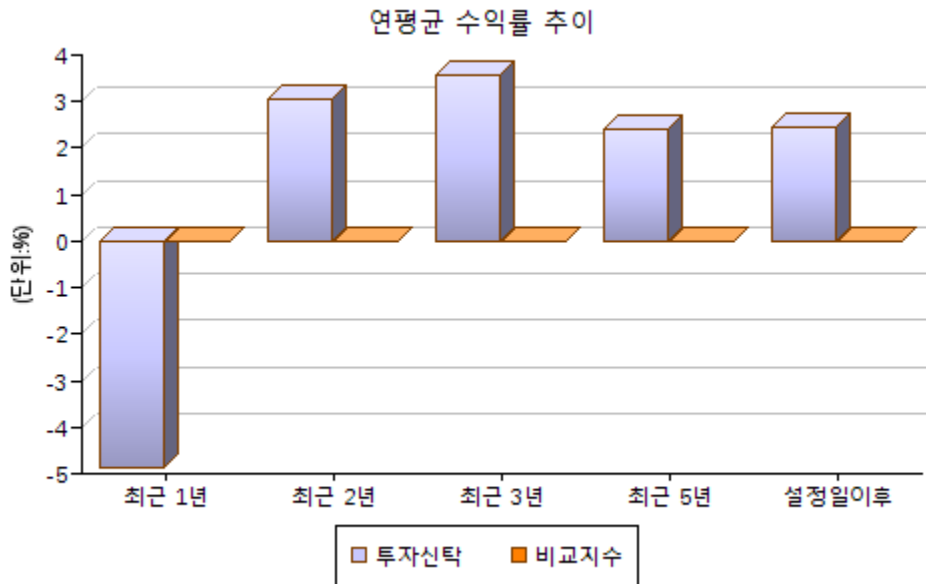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 연평균수익률

(1) 삼성솔루션코리아플러스알파혼합자산투자신탁H[사모투자재간접형]

연도	최근 1년 (21.12.29 ~22.12.28)	최근 2년 (20.12.29 ~22.12.28)	최근 3년 (19.12.29 ~22.12.28)	최근 5년 (17.12.29 ~22.12.28)	설정일 이후 (17.12.18 ~22.12.28)
투자신탁	-4.85 %	3.07 %	3.56 %	2.41 %	2.44 %
비교지수	0.00 %	0.00 %	0.00 %	0.00 %	0.00 %
수익률변동성	4.67 %	4.47 %	5.93 %	5.18 %	5.1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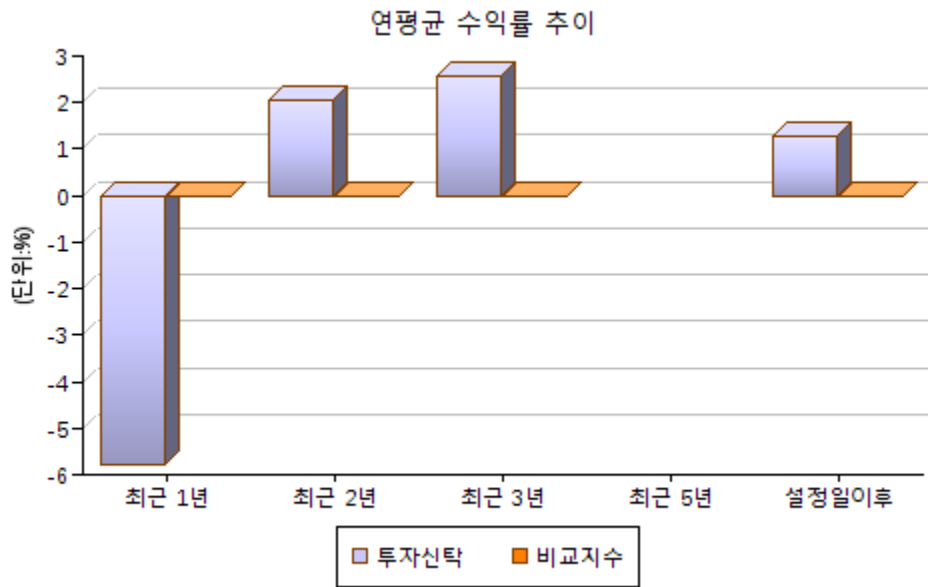
- 비교지수 :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수익률 변동성(%)은 운용펀드 기준이며,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 수익률의 표준 편차입니다.



(2) 삼성솔루션코리아플러스알파혼합자산투자신탁H[사모투자재간접형]_A(수수료선취-오프라인)

연도	최근 1년 (21.12.29 ~22.12.28)	최근 2년 (20.12.29 ~22.12.28)	최근 3년 (19.12.29 ~22.12.28)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18.01.12 ~22.12.28)
투자신탁	-5.78 %	2.07 %	2.56 %		1.29 %
비교지수	0.00 %	0.00 %	0.00 %		0.00 %
수익률변동성	4.67 %	4.47 %	5.93 %		5.17 %

- 비교지수 :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수익률 변동성(%)은 운용펀드 기준이며,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 수익률의 표준 편차입니다.



(3) 삼성솔루션코리아플러스알파혼합자산투자신탁H[사모투자재간접형]_Ae(수수료선취-온라인)

- 해당사항 없음

(4) 삼성솔루션코리아플러스알파혼합자산투자신탁H[사모투자재간접형]_Ag(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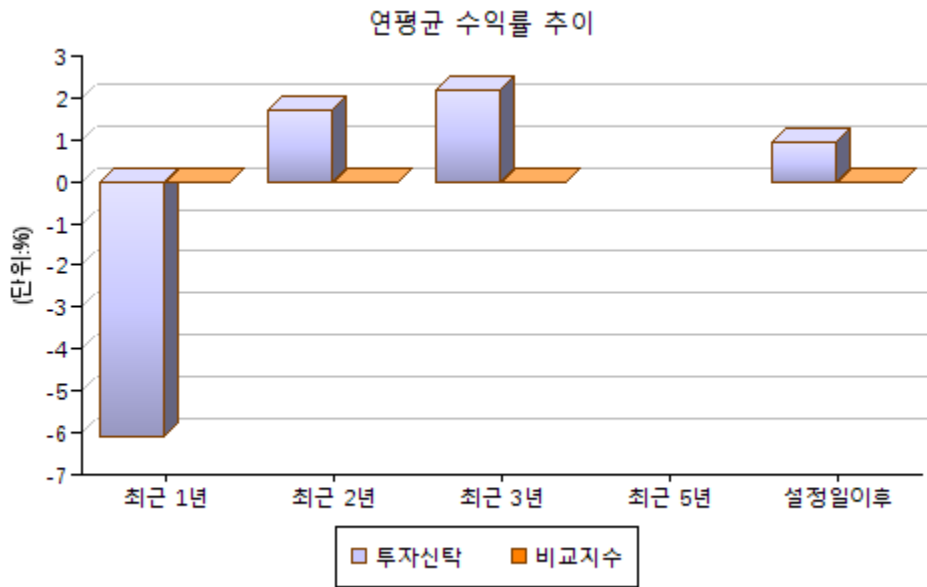
- 해당사항 없음

(5) 삼성솔루션코리아플러스알파혼합자산투자신탁H[사모투자재간접형]_C(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연도	최근 1년 (21.12.29 ~22.12.28)	최근 2년 (20.12.29 ~22.12.28)	최근 3년 (19.12.29 ~22.12.28)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18.01.12 ~22.12.28)
투자신탁	-6.11 %	1.71 %	2.20 %		0.93 %
비교지수	0.00 %	0.00 %	0.00 %		0.00 %
수익률변동성	4.67 %	4.47 %	5.93 %		5.17 %

- 비교지수 :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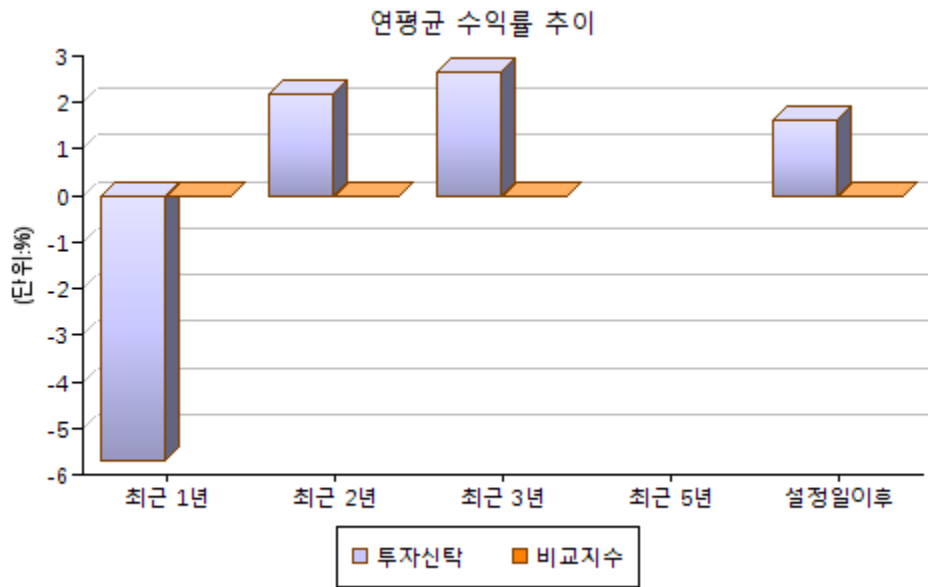
- 수익률 변동성(%)은 운용펀드 기준이며,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 수익률의 표준 편차입니다.



(6) 삼성솔루션코리아플러스알파혼합자산투자신탁H[사모투자재간접형]_Ce(수수료미징구-온라인)

연도	최근 1년 (21.12.29 ~22.12.28)	최근 2년 (20.12.29 ~22.12.28)	최근 3년 (19.12.29 ~22.12.28)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18.02.20 ~22.12.28)
투자신탁	-5.69 %	2.17 %	2.66 %		1.61 %
비교지수	0.00 %	0.00 %	0.00 %		0.00 %
수익률변동성	4.67 %	4.47 %	5.93 %		5.17 %

- 비교지수 :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수익률 변동성(%)은 운용펀드 기준이며,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 수익률의 표준 편차입니다.



(7) 삼성솔루션코리아플러스알파혼합자산투자신탁H[사모투자재간접형]_Cg(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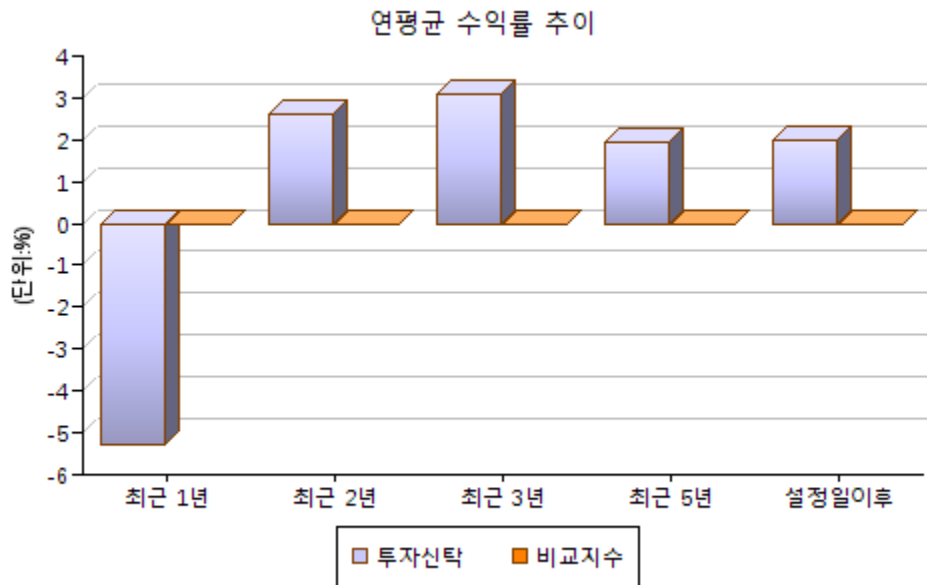
- 해당사항 없음

(8) 삼성솔루션코리아플러스알파혼합자산투자신탁H[사모투자재간접형]_Cf(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연도	최근 1년 (21.12.29 ~22.12.28)	최근 2년 (20.12.29 ~22.12.28)	최근 3년 (19.12.29 ~22.12.28)	최근 5년 (17.12.29 ~22.12.28)	설정일 이후 (17.12.18 ~22.12.28)
투자신탁	-5.29 %	2.60 %	3.09 %	1.94 %	1.97 %
비교지수	0.00 %	0.00 %	0.00 %	0.00 %	0.00 %
수익률변동성	4.67 %	4.47 %	5.93 %	5.18 %	5.17 %

- 비교지수 :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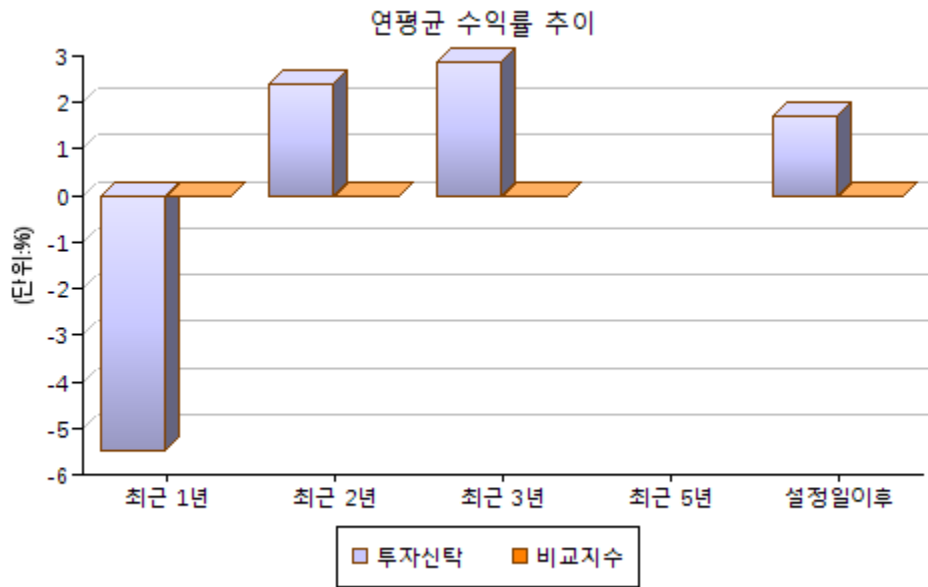
- 수익률 변동성(%)은 운용펀드 기준이며,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 수익률의 표준 편차입니다.



- (9) 삼성솔루션코리아플러스알파혼합자산투자신탁H[사모투자재간접형]_Ci(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 해당사항 없음
- (10) 삼성솔루션코리아플러스알파혼합자산투자신탁H[사모투자재간접형]_Cw(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 해당사항 없음
- (11) 삼성솔루션코리아플러스알파혼합자산투자신탁H[사모투자재간접형]_C-P(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 해당사항 없음
- (12) 삼성솔루션코리아플러스알파혼합자산투자신탁H[사모투자재간접형]_C-Pe(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 해당사항 없음
- (13) 삼성솔루션코리아플러스알파혼합자산투자신탁H[사모투자재간접형]_S(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연도	최근 1년 (21.12.29 ~22.12.28)	최근 2년 (20.12.29 ~22.12.28)	최근 3년 (19.12.29 ~22.12.28)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18.02.23 ~22.12.28)
투자신탁	-5.50 %	2.38 %	2.86 %		1.70 %
비교지수	0.00 %	0.00 %	0.00 %		0.00 %
수익률변동성	4.67 %	4.47 %	5.93 %		5.17 %

- 비교지수 :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수익률 변동성(%)은 운용펀드 기준이며,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 수익률의 표준 편차입니다.



(14) 삼성솔루션코리아플러스알파혼합자산투자신탁H[사모투자재간접형]_S-P(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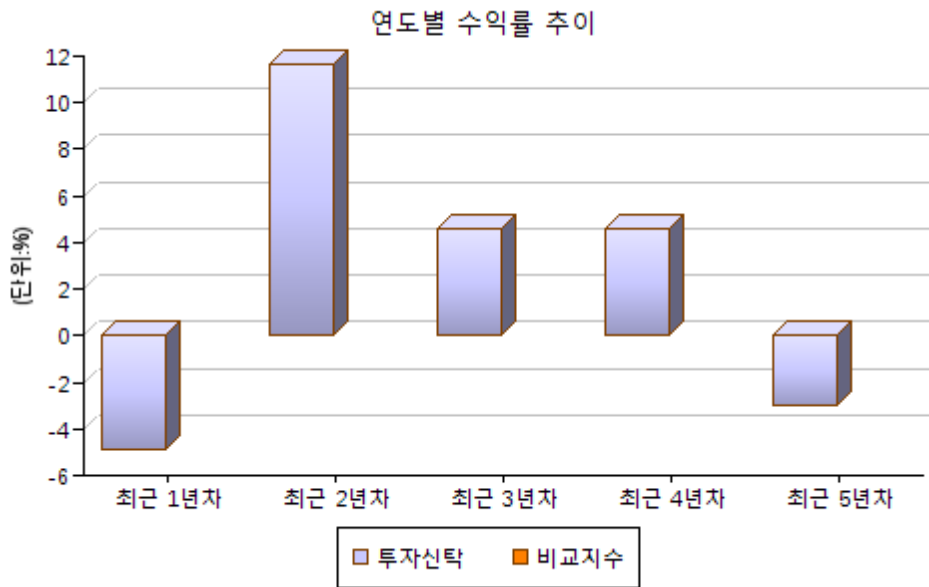
- 해당사항 없음

나. 연도별 수익률

(1) 삼성솔루션코리아플러스알파혼합자산투자신탁H[사모투자재간접형]

연도	최근 1년차 (21.12.29 ~22.12.28)	최근 2년차 (20.12.29 ~21.12.28)	최근 3년차 (19.12.29 ~20.12.28)	최근 4년차 (18.12.29 ~19.12.28)	최근 5년차 (17.12.29 ~18.12.28)
투자신탁	-4.85 %	11.65 %	4.56 %	4.58 %	-3.01 %
비교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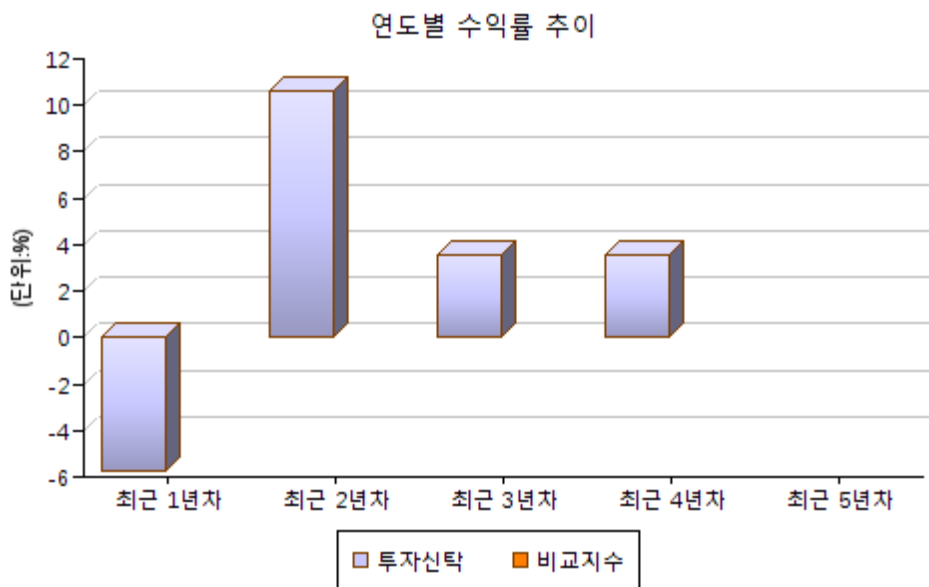
- 비교지수 :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2) 삼성솔루션코리아플러스알파혼합자산투자신탁H[사모투자재간접형]_A(수수료선취-오프라인)

연도	최근 1년차 (21.12.29 ~22.12.28)	최근 2년차 (20.12.29 ~21.12.28)	최근 3년차 (19.12.29 ~20.12.28)	최근 4년차 (18.12.29 ~19.12.28)	최근 5년차
투자신탁	-5.78 %	10.58 %	3.54 %	3.57 %	
비교지수					

- 비교지수 :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3) 삼성솔루션코리아플러스알파혼합자산투자신탁H[사모투자재간접형]_Ae(수수료선취-온라인)

-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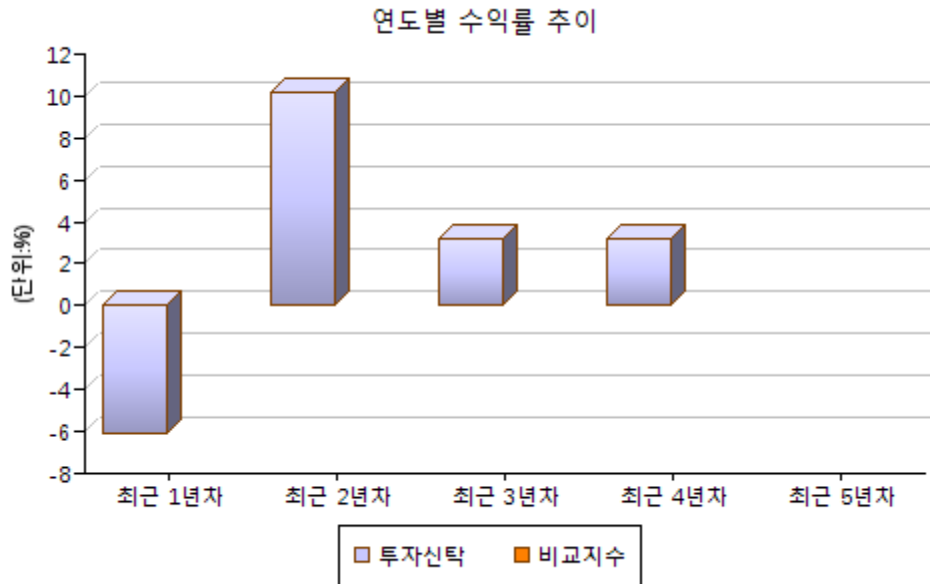
(4) 삼성솔루션코리아플러스알파혼합자산투자신탁H[사모투자재간접형]_Ag(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 해당사항 없음

(5) 삼성솔루션코리아플러스알파혼합자산투자신탁H[사모투자재간접형]_C(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연도	최근 1년차 (21.12.29 ~22.12.28)	최근 2년차 (20.12.29 ~21.12.28)	최근 3년차 (19.12.29 ~20.12.28)	최근 4년차 (18.12.29 ~19.12.28)	최근 5년차
투자신탁	-6.11 %	10.20 %	3.18 %	3.21 %	
비교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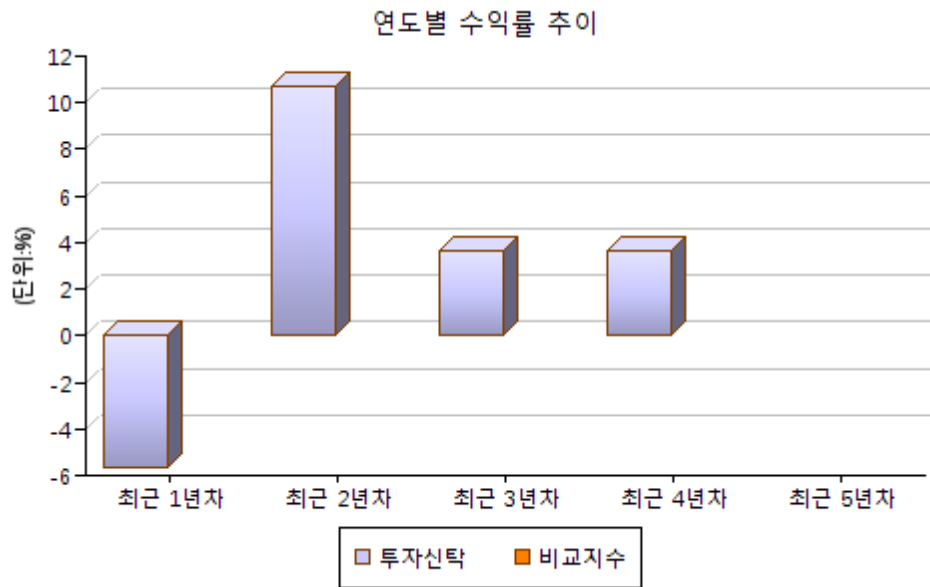
- 비교지수 :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6) 삼성솔루션코리아플러스알파혼합자산투자신탁H[사모투자재간접형]_Ce(수수료미징구-온라인)

연도	최근 1년차 (21.12.29 ~22.12.28)	최근 2년차 (20.12.29 ~21.12.28)	최근 3년차 (19.12.29 ~20.12.28)	최근 4년차 (18.12.29 ~19.12.28)	최근 5년차
투자신탁	-5.69 %	10.68 %	3.64 %	3.67 %	
비교지수					

- 비교지수 :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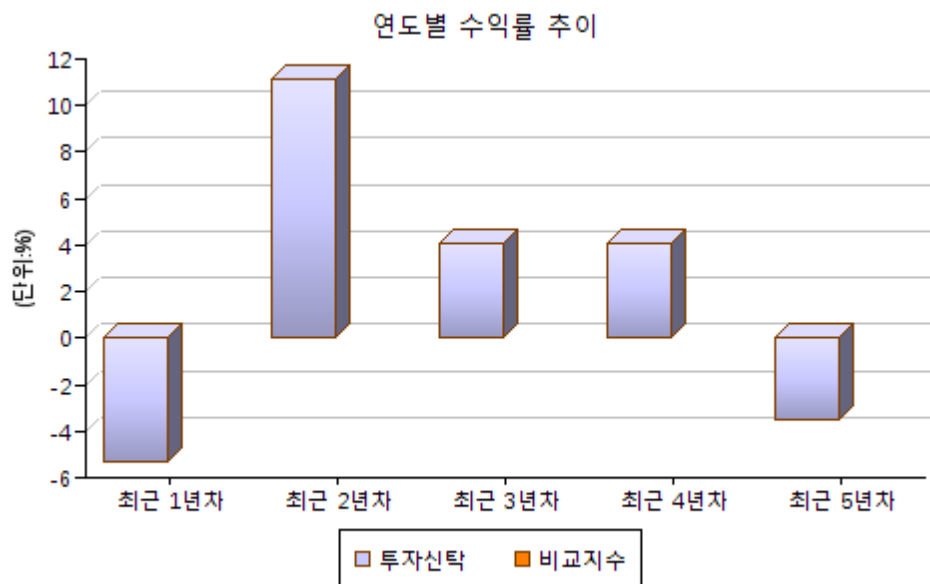
(7) 삼성솔루션코리아플러스알파혼합자산투자신탁H[사모투자재간접형]_Cg(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 비용)

- 해당사항 없음

(8) 삼성솔루션코리아플러스알파혼합자산투자신탁H[사모투자재간접형]_Cf(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연도	최근 1년차 (21.12.29 ~22.12.28)	최근 2년차 (20.12.29 ~21.12.28)	최근 3년차 (19.12.29 ~20.12.28)	최근 4년차 (18.12.29 ~19.12.28)	최근 5년차 (17.12.29 ~18.12.28)
투자신탁	-5.29 %	11.14 %	4.08 %	4.10 %	-3.46 %
비교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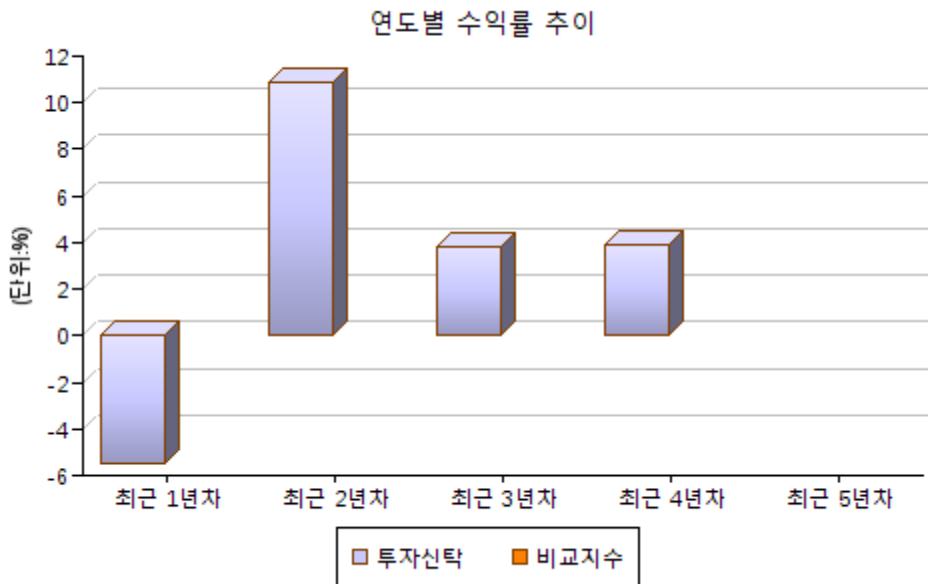
- 비교지수 :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9) 삼성솔루션코리아플러스알파혼합자산투자신탁H[사모투자재간접형]_Ci(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 해당사항 없음
- (10) 삼성솔루션코리아플러스알파혼합자산투자신탁H[사모투자재간접형]_Cw(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 해당사항 없음
- (11) 삼성솔루션코리아플러스알파혼합자산투자신탁H[사모투자재간접형]_C-P(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 해당사항 없음
- (12) 삼성솔루션코리아플러스알파혼합자산투자신탁H[사모투자재간접형]_C-Pe(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 해당사항 없음
- (13) 삼성솔루션코리아플러스알파혼합자산투자신탁H[사모투자재간접형]_S(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연도	최근 1년차 (21.12.29 ~22.12.28)	최근 2년차 (20.12.29 ~21.12.28)	최근 3년차 (19.12.29 ~20.12.28)	최근 4년차 (18.12.29 ~19.12.28)	최근 5년차
투자신탁	-5.50 %	10.91 %	3.85 %	3.88 %	
비교지수					

- 비교지수 :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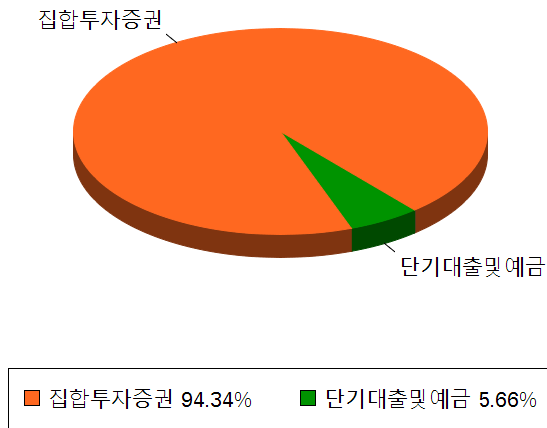


- (14) 삼성솔루션코리아플러스알파혼합자산투자신탁H[사모투자재간접형]_S-P(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 해당사항 없음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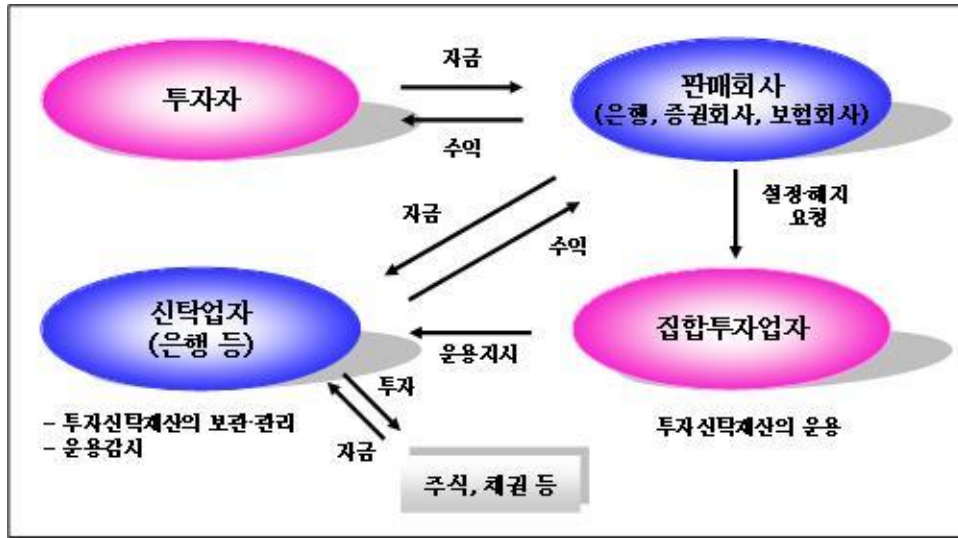
(2022.09.30 기준, 억원)

통화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 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 투자 증권	파생 결합 증권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KRW	0	0	0	152	0	0	-3	0	0	0	11	0	161
USD	0	0	0	33	0	0	0	0	0	0	0	0	33
합계	0	0	0	185	0	0	-3	0	0	0	11	0	194



※ 값이 음수인 경우는 비율 계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삼성자산운용(16~18층) (연락처 : 02-3774-7600, http://www.samsungfund.com)
회사 연혁	<p>1998.09.15 설립등기</p> <p>1999.12.29 구.삼성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흡수합병</p> <p>2000.03.03 자본금 300억 유상증자</p> <p>2000.03.30 회사상호 변경(삼성생명투자신탁운용(주) → 삼성투자신탁운용(주))</p> <p>2001.11.05 연기금 투자폴 주간운용사 선정</p> <p>2002.10.14 국내 최초 상장지수펀드(ETF) KODEX200 상장</p> <p>2007.11.01 해외법인 Samsung Investment Management (Hong Kong)Ltd. 설립</p> <p>2010.02.22 국내 최초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KODEX레버리지 상장</p> <p>2010.04.01 회사상호변경 (삼성투자신탁운용(주) → 삼성자산운용(주))</p> <p>2011.08.26 사옥 이전(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 중구 태평로)</p> <p>2011.12.16 한국형 헤지펀드 삼성H클럽 Equity Hedge 1호 출시</p> <p>2014.07.21 최대주주 변경 : 삼성증권 → 삼성생명</p> <p>2015.02.01 삼성생명 뉴욕현지법인 인수 Samsung Asset Management(New York)</p> <p>2015.03.31 노동부 산재보험기금 전담운용기관(OCIO) 선정</p> <p>2015.11.30 삼성생명 런던현지법인 인수 Samsung Asset Management(London)</p> <p>2015.12.01 관리자산 200兆 달성</p>

회사 연혁	2016.04.21 한국형 Target Date Fund 출시 (美 Capital社 제휴) 2016.04.29 홍콩 증시 최초 원유선물 EIF 상장 2016.08.11 중국 북경 자문사 설립(Samsung Asset Management (Beijing) Limited) 2016.08.29 사옥 이전 (서울시 중구 → 서초구 서초대로 삼성전자 서초사옥) 2017.01.02 물적분할을 통한 삼성액티브자산운용(주) 삼성헤지자산운용(주) 설립 2017.05.30 한국형 Retirement Income Fund 출시 (美 Capital社 제휴) 2017.07.31 업계 최초 FA, FB 전용 판매지원플랫폼 오픈 2017.09.08 연기금 투자플 주간운용사 재선정 2019.03.27 산재보험기금 전담운용기관(OClO) 재선정 2019.12.02 B2C 직관 시스템 'r2' 서비스 오픈 2021.12.14 연기금 투자플 주간운용사 재선정
자본금	934.3억
주요주주현황	삼성생명보험(주)(100%)
사업목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집합투자업(모든 종류의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무, 투자일임업무,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부동산임대업무, 신탁업, 부동산개발업무, 투자중개·매매업(집합투자증권의 중개·매매에 한함), 집합투자기구 또는 증권과 관련된 자료의 출판 및 판매에 관한 업무, 집합투자기구 또는 증권과 관련된 재산권, 상표권 등 권리 행사에 관한 업무, 집합투자기구 또는 증권과 관련된 전산용역 제공 또는 소프트웨어 대여·판매 업무, 자본시장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사업, 인사, 재무, 마케팅, 위험관리, 내부통제, 일반사무관리 등의 용역 제공, 기타 위에 부수되는 일체의 업무 *위 사업 외에 금융위원회로부터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주) 산정 기준일은 2022.1.1일 입니다.

나. 주요 업무

(1) 주요 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2) 선관 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3)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연대 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연결재무상태표

제 24(당기) : 2021년 12월 31일 현재

제 23(전기) : 2020년 12월 31일 현재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당기말	전기말
자 산		
I. 현금및현금성자산	78,739,003,408	92,109,925,967
II.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608,397,341,535	699,677,303,194
III.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5,192,687,938	5,237,354,007
IV. 상각후원가금융자산	179,240,782,900	180,854,632,948
V. 유형자산	2,278,861,792	2,511,689,215
VI. 사용권자산	6,004,967,156	12,995,153,986
VII. 무형자산	35,907,802,947	22,795,737,570
VIII. 순확정급여자산	1,767,900,082	711,205,166
IX. 이연법인세자산	839,608,252	2,176,837,578
X. 기타자산	2,699,312,333	2,279,544,425
자 산 총 계	921,068,268,343	1,021,349,384,056
부 채		
I.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부채	49,151,473	153,614,486
II. 예수부채	571,707,070	19,677,141,119
III. 차입부채	84,900,000,000	223,100,000,000
IV. 기타금융부채	142,842,367,649	183,870,613,502
V. 총당부채	535,608,071	543,271,780
VI. 당기법인세부채	21,505,417,462	19,446,139,418
VII. 이연법인세부채	-	18,954,494
VIII. 기타부채	5,173,003,357	3,050,830,354
부 채 총 계	255,577,255,082	449,860,565,153
자 본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665,491,013,261	571,488,818,903
I. 자본금	93,430,000,000	93,430,000,000
II. 자본잉여금	(384,524,208)	(384,524,208)
III. 기타포괄손익누계액	(7,555,955,386)	(13,623,401,782)
IV. 이익잉여금	580,001,492,855	492,066,744,893
비지배자본	-	-
자 본 총 계	665,491,013,261	571,488,818,903
부 채 및 자 본 총 계	921,068,268,343	1,021,349,384,056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제 24(당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 23(전기) :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당기	전기
I. 영업수익	286,100,646,859	281,961,856,245
1. 수수료수익	263,517,264,100	235,558,024,221
2. 금융상품 평가 및 처분이익	7,625,917,281	16,370,884,970
3. 이자수익	7,208,163,630	19,842,176,554
4. 외환거래이익	1,664,050,317	6,608,225,568
5. 배당금수익	5,043,707,645	2,703,107,008
6. 기타수익	41,543,880	279,437,524
II. 영업비용	163,771,413,698	177,484,849,403
1. 수수료비용	11,466,044,002	10,389,879,191
2. 금융상품 평가 및 처분손실	5,861,026,450	31,689,897,214
3. 이자비용	2,989,762,511	2,699,760,242
4. 외환거래손실	704,401,436	6,012,749,297
5. 판매비	11,607,991,640	7,551,656,929
6. 일반관리비	131,718,689,687	119,180,328,253
7. 기타비용	23,497,972	10,578,277
III. 영업이익	121,329,233,155	103,877,006,842
IV. 영업외손익	(76,870,332)	537,991,662
1. 영업외수익	208,452,188	827,980,176
2. 영업외비용	285,322,520	290,988,514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21,252,362,823	104,414,997,504
VI. 법인세비용	93,317,614,861	27,917,253,524
VII. 당기순이익	87,934,747,962	76,497,743,980
VIII. 기타포괄손익	6,067,446,396	(4,333,019,700)
1. 후속적으로 당기순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1,067,539,000)	(537,303,55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손익	(295,964,890)	(364,024,260)
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1,111,372,931)	(345,884,256)
후속적으로 당기순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의 법인세	339,198,811	172,604,960
2. 후속적으로 당기순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7,134,985,396	(3,795,716,14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손익	(113,232,337)	138,508,814
해외사업환산손익	7,211,553,102	(3,889,375,804)
후속적으로 당기순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의 법인세	36,664,631	(44,849,154)
IX. 당기총포괄이익	94,002,194,358	72,164,724,280
X. 당기순이익의 귀속	87,934,747,962	76,497,743,980
1. 지배기업의 소유주	87,934,747,962	76,497,743,980
XI. 당기총포괄이익의 귀속	94,002,194,358	72,164,724,280
1. 지배기업의 소유주	94,002,194,358	72,164,724,280
XII. 지배기업 주주지분에 대한 주당이익		
1. 기본주당순이익	4,706	4,094

라. 운용자산규모

(2022.12.28 현재/억좌)

구분	증권					MMF	특별자산	부동산	혼합자산	총계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파생 상품	재간접					
수탁고	173,357	10,204	117,331	151,031	483,546	147,270	71,541	1,425	8,854	1,164,559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회사

(1) 회사 개요

회사명	국민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전화번호 : 2073-7114
회사 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kbstar.com

(2) 주요 업무

- 1)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2)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3)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4)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5)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6) 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7)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8)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1) 의무

- ① 신탁업자는 수익자를 위하여 법령, 신탁계약, 투자설명서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신탁계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2)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연대 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나. 일반사무관리회사

- 해당사항 없음

다.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

- 해당사항 없음

라. 채권평가회사

(1) 회사개요

회사명	한국자산평가(KAP)	나이스피앤아이(주)	KIS채권평가	에프앤자산평가(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8 (운니동, 삼환빌딩) 4층 TEL: 02-2251-1300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여의도동, 대하빌딩 4층) TEL:02-398-39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여의도동, 한국화재보 험협회빌딩) 4층 TEL:02-3215-1416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5길 29 (인사동, 태화빌딩) 4층 TEL: 02-721-5300
회사 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koreabp.com	www.nicepni.com	www.bond.co.kr	www.fnpricing.com

(2) 주요 업무

-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1)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2)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3) 종류형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1) 수익자총회의 소집

- ①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②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③ 집합투자회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의결권 행사 방법

- ①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②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 제221조제6항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에 적힌 내용을 알리는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 보호와 수익자총회 결의의 공정성 등을 위하여 간주의결권행사의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따를 것

- ③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④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⑤ 모자형투자신탁인 경우 자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의결사항과 관련하여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에서 의결된 찬반비율에 비례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3) 연기수익자총회

-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는 법 제190조 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②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의결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그 이외에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익자총회 결의사항은 없습니다.

-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각 사유 제외).
-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 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제외)
- 4) 투자신탁 종류의 변경. 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분할·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변경이 아닌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7)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9) 그 밖에 수익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 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집합투자업자가 시행령 제225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1)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 (2)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집합투자재산 운용 내역서
 - 2)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1)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신탁계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수익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2)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3)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 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시행령 제135조 제2항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1) 이 상품의 신탁계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수익자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2)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3)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4)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은 그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큰 금융투자상품을 의미하며 투자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 ① 판매회사에게 판매과정을 녹취한 파일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② 숙려기간 동안(2영업일 이상) 청약 또는 주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③ 숙려기간이 지난 후 투자자의 청약·주문 의사가 확정적임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한 후에 청약·주문을 집행합니다.
 - ④ 숙려기간 동안 시장상황의 변동 등으로 인해 자산가치의 변동위험, 거래조건의 변경위험, 환율 변동위험 등과 같은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⑤ 숙려기간을 배제하기 위해 투자자에게 그 청약·주문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표시해 줄 것을 권유하거나 강요할 수 없습니다.

2. 집합투자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투자신탁의 등록 취소/수익자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일반사모펀드에 한함)법 제 249조의 9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인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지명령을 받은 경우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최초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판매회사에 통지하거나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1) 영업보고서

-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 법 제87조제8항제1호·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2)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 ②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③ 투자신탁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 1)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위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우편발송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2)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①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하 '기준일')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 ②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③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④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②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③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④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신탁계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신탁계약의 주요 변경사항/투자운용인력의 변경/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4) 기타 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 변경에 관한 공시

- 1)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②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각 사유 제외)
 - ③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 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④ 투자신탁 종류의 변경. 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 ⑤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⑥ 집합투자업자의 합병·분할·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변경이 아닌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⑦ 환매금지형 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⑧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2)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다음에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www.samsungfund.com)·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와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 및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 (운용한 집합투자 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함)
-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4)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 8) 설정 및 설립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 9)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 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가. 법시행령 제24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 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라.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11) 그 밖에 수익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1)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 ① 법 제8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②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③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2)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부터 5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할 것

(4) 수익자에 대한 공고 등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일간신문에 광고를 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한국경제신문에도 공고합니다.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구분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증권의 거래	- 평가 항목 중개거래 시장점유율, 거래관련 자격보유여부, 조직 및 인력현황, 리서치 서비스의 질, 감독기관 제재 및 시정조치 내역, 결제안정성, 시장정보 제공능력, 매매체결의 신속성, 거래관련 보안유지 능력, 세미나 개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개회사를 선정합니다.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 선정방법 평가방법을 펀드매니저, 애널리스트, 트레이더 등 중개사와 업무적으로 관련 있는 담당자들이 분기 1회 이상 배점방식에 의해 평가항목별 점수를 평가하여 중개회사를 선정합니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가. 의무투자

투자주체	삼성자산운용(주)
투자목적	고유재산의 운용 효율을 도모하고, 운용실적(Track Record)을 축적하고자 함
투자시기	최초 설정일
투자금액	2억원
투자기간	최초 설정일로부터 3년간
투자금 회수계획	투자기간 이후 시장상황에 따라 2회 이상 분할하여 회수

- 1) 투자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① 당연 해지사유 발생
 - ② 소규모 펀드로서 임의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
 - ③ 다른 투자자의 전액 환매로 해지. 해산하는 경우
 - ④ 다른 모펀드의 자펀드로 편입(신규 설정 후 6개월이 되는 날 설정액이 15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다른 모펀드의 자펀드로 편입)되는 경우 또는 소규모 펀드 정리를 위해 모펀드를 교체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 ⑤ 의무투자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펀드를 이전 받는 집합투자업자가 자사펀드 투자 의무를 승계
- 2) 투자금의 분할 회수는 회차별로 1개월 이상의 시차를 두고 회수할 예정이며, 1회당 회수금액은 투자금의 50% 이내로 합니다. 다만, 투자금이 펀드 수탁고의 5% 미만인 경우에는 일시 회수 할 수 있습니다.
- 3) 투자기간 종료 1개월 이전에 투자금 회수에 대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예정입니다.
- 4)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내역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 투자목적의 투자

해당사항 없음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용어	내용
집합투자업자	2인 이상 투자자에게 모은 금전 등을 받아 증권(주식, 채권 등)등에 투자·운용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신탁업자	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방형(집합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추가형(집합투자기구)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 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재산의 50% 초과하여 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전일의 펀드 잔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보수 또는 총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판매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판매 및 관리 등 집합투자증권 매입, 환매 및 투자기간 중 지속적으로 제공된 서비스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가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므로, 간접적으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으로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보수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신탁보수, 성과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물환거래	장래의 일정기일 또는 일정기간 내에 일정액의 외국통화를 일정한 환율로 매매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거래로 환헤지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됩니다.
수익자총회	수익증권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정된 안건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됩니다. 만약 이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상 증권의 일종으로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투자신탁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수탁고	펀드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집합투자업자가 고객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지칭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판매수수료	판매회사가 판매 또는 환매시 일시에 투자자로부터 받거나 투자기간 동안 분할하여 투자자로부터 받는 방법으로 수취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집합투자증권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용어	내용
	판매의 대가 또는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로 판매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지급 받는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 등의 명칭으로 구분합니다.
설정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신탁업자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해지	투자신탁(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현재 관련 법령 등에서는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투신사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매수수료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환헤지	해외펀드는 대부분 외국 통화로 증권 등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선물환 계약(미리 정해놓은 환율을 만기 때 적용하는 것) 등을 이용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이 변동되는 위험을 제거하는 환헤지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